
활력있는 민생경제

- 2024년 경제정책방향 -

2024. 1. 4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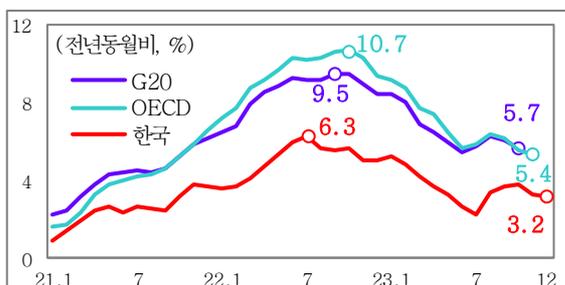
I.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	1
II. 향후 경제여건 점검	2
III. 2024년 경제전망	5
IV. 2024년 경제정책방향	6
1. 민생경제 회복	7
2. 잠재위험 관리	28
3. 역동경제 구현	33
4. 미래세대 동행	46
[별첨1] 2024년 상세 경제전망	53
[별첨2]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	63

I. 그간 정책 대응 및 평가

□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정책 기본틀 재정립에 전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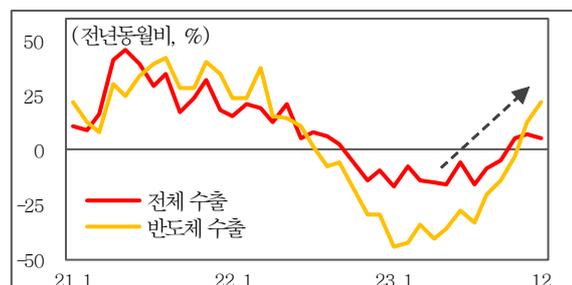
- ① 전세계적 고물가·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
 - 정책공조, 시장 안정조치 등을 통해 불안요인 조기 진화
 - * 레고랜드·SVB 파산·새마을 금고 사태 등 신속 대응, 85조원 유동성 공급 등
 -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 추진, 민간 중심 수출·투자 활력 지원
 - * 유류세·할당관세 인하, 먹거리 수급관리,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및 K칩스법 도입 등
 - ② 건전재정 기조 확립, 규제혁신, 부동산 세제·규제 정상화 등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·시장 중심으로 전환
 - *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, 규제혁신, 경제형별 규정 개선,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등
 - ③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·투자 저변 확대
 - * 중동(사우디, UAE, 카타르 등) 대규모 수주, 한·미·일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
 - 공급망 차질 조기 해소 및 법 제정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강화
- ⇒ 물가는 하향 안정세,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전환, 고용은 양호,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며 위기 진정 국면 진입
- *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(23.11월 63.1%), 10개월 연속 역대 최저 실업률(23.11월 2.3%)
 - ** '23년 물가·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, OECD 35개국 중 2위(Economist<23.12.17일>)
- 다만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 지속 및 부동산 PF,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 상존
 -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제·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, 국가채무 증가, 인구·기후위기 등 위협요인 상존

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, OECD

전체·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



* 출처 : 관세청

II. 향후 경제여건 점검

◇ 세계 교역·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 되겠지만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로 내수·민생 어려움 예상

1 경기 여건

□ (대외)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, 구조적 리스크 확대

○ 세계성장은 반등이 어렵겠지만, 중심축이 “내수→교역”으로 전환되며 내수(美·中)-수출(獨·韓·대만) 국가간 상반된 흐름 예상

* '23→'24년 세계경제 전망(%), IMF(<'23.10월>) : (성장) 3.0 → 2.9 (교역) 0.9 → 3.5
- 국가별 성장전망(%): (美) 2.1→1.5 (中) 5.0→4.2 / (獨)△0.5→0.9 (대만) 0.8→3.0

○ 다만, 지정학적 위험(중동/러·우/中·대만), 글로벌 분절화 심화,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

* 주요국 정치 이벤트[24.1월 대만, 3월 러·우, 11월美 대선 등] 전후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

□ (대내) 회복세 확대되나,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 예상

○ 반도체·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 되겠지만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둔화, 건설경기 부진 전망

▪ (수출) 세계 교역·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수출 개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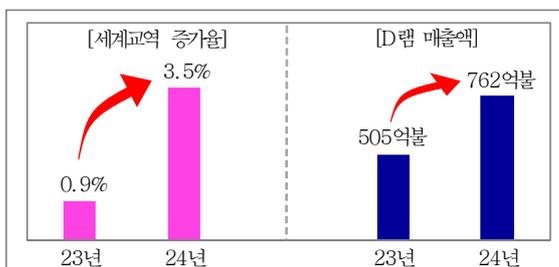
▪ (투자) IT업황 호전, 수출 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, 부동산 경기 하강, 건설수주·착공 부진 등으로 건설 중심 어려움 예상

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) : ('22.4/4)△17.4 ('23.1/4)△11.1 (2/4)△31.5 (3/4)△44.7

▪ (소비) 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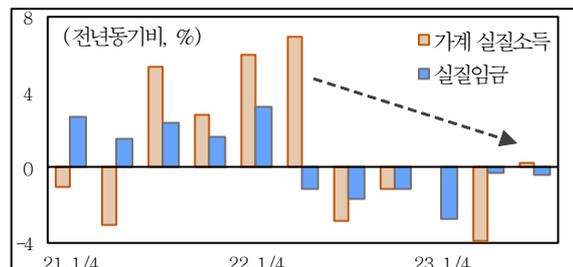
⇒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·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우려

세계교역 및 D램 매출 변화



* 출처 : IMF('23.10월), WSTS('23.11월)

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, 고용부

2

금융·부동산시장 여건

□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성 확대

- (금융)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은 다소 완화
 - * 코스피(pt, 기말) : ('23.7) 2,633 (8) 2,556 (9) 2,465 (10) 2,278 (11) 2,535 (12) 2,655
 - * 원/달러 환율(기말) : ('23.7) 1,275 (8) 1,322 (9) 1,349 (10) 1,351 (11) 1,290 (12) 1,288
- 다만, 금리인상 영향 누적 등에 따라 부동산 PF, 가계부채,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잠재
- (부동산)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, 최근 거래도 감소 추세
 - * 서울APT 매매가(전주비, %) : ('23.10.1주)0.10 (11.1주)0.05 (12.1주)△0.01 (12.4주)△0.03
 - * 전국APT 매매거래량(만호) : ('23.4) 3.5 (5) 4.1 (6) 4.0 (7) 3.6 (8) 3.9 (9) 3.8 (10) 3.5 (11) 3.3
-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다소 완화됐으나, 지역 다세대·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어려움 지속 가능성
 - * 전국 전세가(전월비,%) : ('23.3)△1.13 (5)△0.31 (7)△0.04 (9)0.32 (11)0.27
 - 지방 연립·다세대 전세가(전월비,%) : ('23.3)△0.17 (5)△0.18 (7)△0.10 (9)△0.06 (11)△0.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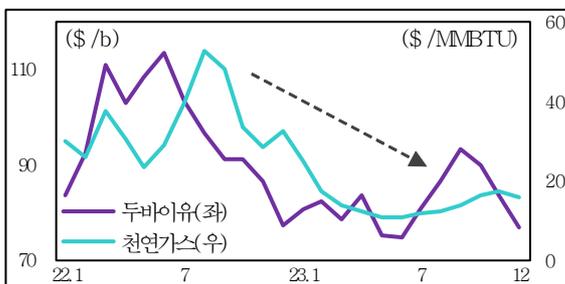
3

민생 여건

□ (물가)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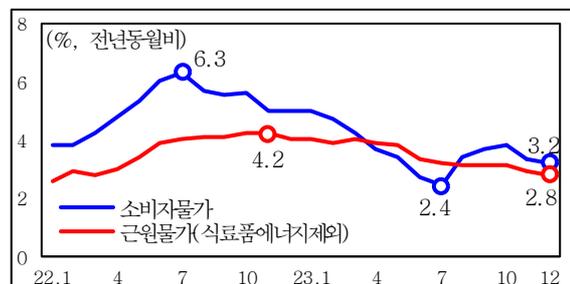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, 기대 인플레이 하락 등 수요압력 완화 영향으로 서서히 둔화 예상
 - * 국제유가(두바이유, \$/B) : ('23) 82 [(1/4) 80 (2/4) 78 (3/4) 87 (4/4) 84] ('24^e) 81
 - * 기대 인플레이션율(%) : ('23.1/4) 3.9 (2/4) 3.6 (3/4) 3.3 (10) 3.4 (11) 3.4 (12) 3.2
- 다만,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 제약 전망
 - * 물가상승률(%) : ('21) 2.5 ('22) 5.1 ('23) 3.6 ('24^e) 2.6 < 최근 5년('18~'22년) 평균 : 2.0 >
- 지정학적 갈등,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

국제원자재 가격 추이



* 출처 : 페트로넷, Korea PDS

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□ [고용]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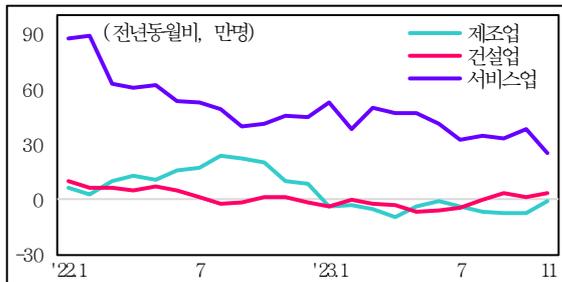
- 그간 고용 호조를 견인하던 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축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예상

* 취업자증감(만명) : ('21) 37 ('22) 82 ('23.1~11) 33 [서비스업>+40 <제조업>△5 <건설업>△2]

- 노동공급 측면에서 여성·고령층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긍정적 요인이나,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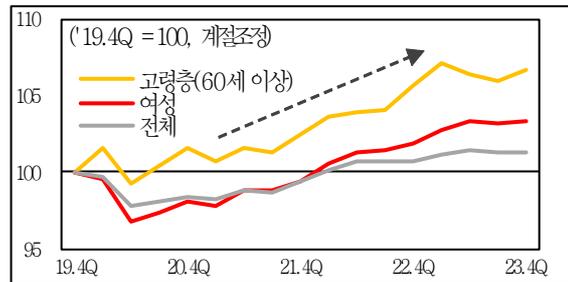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, 전년비, 만명) 증감 : ('20)△15.3 ('21)△14.1 ('22)△26.5 ('23.1~11)△27.7

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여성·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4 구조적 여건

□ 역동성·성장잠재력 저하, 인구·기후 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

- 과도한 규제,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, 경쟁제한적·불공정 관행 등으로 생산성 제약 및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

*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(WIPO, '23년, 132개국) : (혁신역량)10위 (규제환경)53위 (기업정책)58위

*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('21년) : 진입장벽 규제 수준은 38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

- 교육·노동시장 혁신 지체 등으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

* 교육경쟁력(IMD, '23년) : 63개국 중 26위 (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적합도는 49위로 최하위권)

-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 시급

-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중장기 정책대응 여력 저하

* 국가채무(조원) : ('17) 660 ('18) 681 ('19) 723 ('20) 847 ('21) 971 ('22) 1,067

◇ '24년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, 내수·민생 어려움이 예상되고 취약부문의 잠재 위험요인과 구조적 부담요인 상존

☞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,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미래대비 노력 강화 필요

Ⅲ. 2024년 경제전망

	2023년	2024년
▪ 경제성장률(%)	1.4	2.2
▪ 취업자증감(만명)	32	23
- 고용률(%, 15세 이상)	62.6	62.8
▪ 소비자물가(%)	3.6	2.6
▪ 경상수지(억불)	310	500
- 통관수출(%)	△7.4	8.5
- 통관수입(%)	△12.1	4.0

① (성장)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(1.4→2.2%) 전망

-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강화 예상

* '23→'24년 세계경제 전망(% IMF<'23.10월>) : (성장) 3.0 → **2.9** (교역) 0.9 → **3.5**

* '23→'24년 반도체 매출전망(% WSTS<'23.11월>) : (전체) △9.4 → **13.1** (메모리) △31.0 → **44.9**

- 다만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,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 예상

② (고용) 취업자수는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되면서 23만명 수준 증가 전망

- 고용률의 경우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,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 전망

③ (물가)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(3.6%)보다 상당폭 둔화(2.6%)될 전망이나, 상반기까지는 3% 내외 수준이 지속될 전망

- 지정학적 리스크, 기상여건 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

④ (경상수지) 전년(310억불)보다 흑자폭 대폭 확대(500억불) 전망

-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 확대되는 가운데,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예상

* '23→'24년 수지 전망(억불) : (상품수지) 310 → 550 (서비스·소득수지) 0 → △50

IV. 2024년 경제정책방향

기본방향

경제운용 4대 기조

자유

공정

혁신

연대

목표

활력있는 민생경제

민생경제 회복

- ✓ 물가·서민생활 안정
- ✓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- ✓ 내수·수출 회복 가속화
- ✓ 지역경제·건설투자 활성화

잠재위험 관리

- ✓ 부동산 PF 연착륙
- ✓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
- ✓ 공급망 안정 확보
- ✓ 금융 안정·건전성 제고

역동경제 구현

- ✓ 혁신 생태계 강화
- ✓ 공정한 기회 보장
- ✓ 사회 이동성 제고

미래세대 동행

- ✓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
- ✓ 인구·기후 위기 대응
- ✓ 미래세대 기회 확대

1. 민생경제 회복

1 물가·서민생활 안정

◇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, 핵심 생계비 경감,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

① 상반기중 2%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

○ (재정 지원) 농축수산물 할인지원,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·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.8조원 확대된 총 10.8조원 지원

▪ 주요 식품·원자재 할당관세(약 7,500억원),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

▪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(現 6,860개)하고, 배달료 지원사업* 신규 추진(30억원) 등 인센티브 확대

* 민간 배달앱과 협조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발급('24.3월~)

○ (수급 안정)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* 관세 면제·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0만톤 신속 도입(1,351억원 관세 지원)

* [신선] 바나나(15만톤), 파인애플(4만톤), 망고(1.4만톤), 자몽(8천톤), 아보카도(1천톤), 오렌지(5천톤) [냉동] 딸기(6천톤), 기타(1.5만톤) [가공] 사과농축액, 과일퓨레,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(수입전량)

▪ 채소 및 축산물 가격·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·건고추·양파, 닭고기·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 도입

* [채소류] 대파 할당관세(3천톤), 건고추(2천톤) 및 양파(2만톤) TRQ 적기 도입 [축산물] 닭고기(3만톤), 계란가공품(5천톤), 계란(수입전량) 할당관세 물량 신속 반입

○ (공공요금) 중앙·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,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*

* (공공기관) 물가안정 기여시 그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지 반영(가점 반영 등) (지자체) 물가안정 노력 평가시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 확대

○ (경쟁 촉진)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('24.上)하고, 부문별 경쟁제한요소 개선 지속

* (예) 석유, 주류, 통신장비, 금융, 아파트 입찰, 돼지고기 유통, OTT 서비스 등

○ **(정보 제공) 주요 생필품 용량 등 변경 시 정보공개 의무화('24.2/4)**

* 공정위 고시('24.1/4) 및 식약처·환경부·산업부 고시('24.2/4) 개정

- **약사회 협조下 다소비의약품*(40여개)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,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체육교습업(13세 미만)까지 확대****

* 감기약, 연고, 간장제, 소화제, 영양제, 파스류, 해열진통제, 항히스타민제 등

** (現)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력단련업 → (추가) 체육교습업(13세 미만)

○ **(제도 개선)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, 중소기업 지원 강화**

- **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·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추진('24.上)**

* (예)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 부여 등

【참고】 '24년 할당관세(과일·채소·축산물) 적용 계획

1. 정기 할당관세(1.1일 시행)

품목	현행세율(%)	변경세율(%)	물량(톤)	기간
닭고기	20~30	0	30,000	1.1~3.31
계란가공품	8~30	0	5,000	1.1~6.30

2. 긴급 할당관세(1월중 시행)

① 과일류(~6.30): 신선/냉동 23.9만톤 + 가공품 도입 전량 등 21개품목 30만톤 수준

	품목	현행세율(%)	변경세율(%)	물량(톤)
신선 (6개)	바나나	30	0	150,000
	파인애플	30	0	40,000
	망고	30	0	14,000
	오렌지	50	10	5,000
	자몽	30	0	8,000
	아보카도	30	0	1,000
냉동 (2개)	딸기	30	0	6,000
	기타	30	0	15,000
가공 (13개)	사과주스	45~50	5~10	수입전량
	레몬주스	50	10	
	채소주스	30	0	
	자몽주스	30	0	
	기타 단일과실주스	50	10	
	처리 배	45	5	
	처리 기타	45	5	
	토마토페이스트	5	0	
	으깬파인애플	45	5	
	과일컵테일	45~50	5~10	
	과일퓨레	30	0	
	으깬감귤류	45	5	
	마말레이드	30	0	
총계				약 30만톤

② 채소·축산물 : 신선대파, 계란

품목	현행 세율(%)	변경 세율(%)	물량(톤)	기간
신선 대파	27	0	3,000	~3.31
계란	27	0	수입 전량	~6.30

②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

- (교육) '24.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(1.7%) 동결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,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(年 350→400만원)
 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 인하(月 1.2→0.5%)
- (의료)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·재산기준 대폭 완화*
 - * (소득) 年 100 → 336만원 미만 (재산) 100 → 450만원 미만
 - 소득하위 30%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 수준 동결
- (금융)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·상담서비스 등 지원 강화
 - (연체 발생前)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(연초계획9.8조원)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, 대출한도 증액* 연장(~'24년)
 - * 근로자햇살론(1,500→2,000만원), 햇살론15(1,400→2,000만원), 햇살론뱅크(2,000→2,500만원)
 - (연체 발생時) 채무조정 특례* 기한을 일괄 연장(~'24년)하고,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 한시 단축(2→1년, ~'24년)
 - * ① 신속채무조정 특례(약정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), ② 프리워크아웃 특례(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), ③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'24.12월까지 연장
 - (회생·파산 신청時)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면책제도*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(現 5개 법원 시행)
 - *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 기초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·면책
- (납세)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 반영,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, 급여채권 금액(現 185만원) 등 인상*
 - * 최저생계비, 4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감안하여 '24.2월 시행령 개정시 반영

3 역전세·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·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【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】

○ (다세대·다가구 지원)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·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「다세대·다가구 지원 3종 세트」 시행

①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 매입*시 1년 한시('24년) 취득세 감면(최대 200만원)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**

* ① 60㎡ 이하,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 이하 주택,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, ④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

**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'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' 수혜 가능(지특법 개정, 국회통과 전제)

②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, 등록임대사업자가 LH·지역주택도시공사에 '24년에 한해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 양도*할 수 있도록 허용**

* ① 60㎡ 이하, ②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 이하 주택, ③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

**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(과태료 등) 미적용

③ '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·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

○ (공공임대 지원)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.5만호 이상 공급*

* 공공매입 단가(현 원가이하 매입) 현실화, 매입기준 및 절차개선 등 검토 → 물량 확대 추진

공공임대 공급물량(만호)

	건설임대	매입임대	구축	전세임대	계
'23 → '24년	3.5 → 3.5	3.5 → 4.0+α	0.5 → 1.0 이상	3.7 → 4.0	10.7 → 11.5+α

▪ '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*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 유도

* 연립·다가구·다세대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경감 확대(△25→△50%)

○ (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)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'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*' 참여 금융기관을 쏠금융권**으로 확대

*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실행하는 사업

** ('24.上) 기은·신협·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 추가 참여 → ('25년) 쏠 금융권 점진적 확대

-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 보장
- *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신청시 임차인에게 자동안내(문자·알림톡) 서비스 제공

【 서민·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】

- (주택유형 다양화) 청년·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·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·임대료 인하 유도

- ▶ **토지임대부 주택**: 토지는 임대 &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
→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(10%) 면제 통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(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)
- ▶ **지분적립형 주택**: 20~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
→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, 재산세 25% 감면(3년간)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~10% 인하
- ▶ **공유형 주택**: 주방·다용도실 등 생략(또는 공유) 통해 「넓은 공간 + 저렴한 가격」 모델
→ ① (분양) 청년·신혼부부 수요조사 통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* 공급 검토
* 공간 절약형 설계(주방·다용도실의 생략, 공유공간 마련 등)를 통한 주택 분양
② (임대) 도심에 복층·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 가능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
* 거실, 주방, 세탁실 등 공유, 워크센터·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조성

- (전세대출) 청년·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
-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·한도 확대
- *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여 운영('24.上)
↳ (임차보증금) 2 → 3억원 / (대출한도) 1 → 2억원 / (금리) 1.5~2.4%
- '23.1.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*(버팀목대출) 지원
- * (보증금) 5억원(수도권 외 4억원) 이하, (한도) 3억원, (금리) 시중대비 △1~△3%p(4년간)
- (정책모기지) 디딤돌대출·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·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·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
- 신생아 특례대출* 포함 35조원 규모('24년 예산)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·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 지원
- * (주택가액) 9억원 이하 (소득) 부부합산 1.3억원 이하 (한도) 5억원 (금리) 시중대비 △1~△3%p
- '24.1월 말(1.29일)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,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

- ◇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①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【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】

- ① (에너지) 1/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(연매출 3천만원 이하)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, 총 2,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 지원
- ② (고금리) 상생금융·재정지원 등 통해 2.3조원+a 규모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, 저리 대환 프로그램(최대 9조원) 개편

- ▶ 은행권(2조원+a, 자체자원): 이자환급(187만명, 1.6조원) + 취약계층 지원(0.4조원) 등
 - 이자환급: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% 초과 이자납부액의 90%, 차주당 최대 300만원
 - 취약계층: 이자환급 외 임대료·전기료 등 지원, 신보·기보·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
- ▶ 제2금융권(3천억원, 재정지원): 5~7%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환급
 -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% 초과 이자납부액(금리 6.5% 이상은 일괄 1.5%p 지원)
 - * 재정을 통해 금융기관(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 등)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보전('24년 예산)
- ▶ 저리 대환대출*(금리 7%이상 → 5.5%이하) 지원 강화: 최대 9조원 대출 대환
 - * 이와는 별도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자금 0.5조원 지원
 - 1년 한시 최대금리 5.5→5.0%, 신보료(0.7%) 감면, 지원대상 확대(~'22.5월→'23.5월말까지 대출)

- ③ (세부담)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(現 8,000만원)을 상향하여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

【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 】

- (세제지원)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(40→80%, '24.上)하고,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* 신설

* 기본한도(일반기업 1,200만원, 중소기업 3,600만원)의 10%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

○ (선결제·선구매) 공공부문*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, 민간부문**의 자발적인 '24년 상반기 선결제·선구매 캠페인 동참 유도

* 비품 선구매, 회의·축제 조기계약·선지급, 상반기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

** 한국경제인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참여

○ (온누리상품권) 사용처를 대폭 확대*(가맹점 +5만개)하고, 발행량도 전년대비 1조원 확대(4→5조원)

*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(면적요건(2천㎡내 30개 이상 점포) 폐지)로 자율적 지정 유도 등

【 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 】

○ (재기지원)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로 '23.11월 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(부실우려)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지원

▪ 자연·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*하여 세부담 완화

* 퇴직소득 적용 : (現) 폐업·퇴임·노령·사망 → (추가) 자연·사회재난,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 등
- (기타소득) 별도 공제 없이 15% 세율 적용
- (퇴직소득)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,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부담 낮음

○ (경쟁력 강화)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'경쟁력 강화대책('24.1/4)' 마련, '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*' 제정 추진

*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,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근거 등 포함('24.下)

▪ 민간협회 등 협업*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·컨설팅 강화

* (수요조사)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사전조사 (프로그램) 업종별 교육컨설팅 제공(예: 음식점업→상권분석, 도소매업→유통트렌드 등) (상권정보) 창업희망자 컨설팅 과정에서 희망지역·업종의 상권 정보를 맞춤형 제공

▪ 상점에 키오스크·스마트오더,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*하고,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·배송 시스템을 확충**

* 스마트상점(개) : ('23) 5,500 → ('24) 6,000 / 스마트공방(개) : ('23) 1,500 → ('24)1,800

** 디지털 전통시장(개) : ('22) 22 → ('23) 28 → ('24) 34

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

- ※ '24년 저소득층·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8.8% 확대(206.0→224.1조원, 총지출 증가율 2.8%의 3배 수준)
- (노인)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(88.3→103만명, +14.7만명) 하고, 수당도 '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(+2~4만원, +7%)
 - 1/4분기중 노인·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%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 추진
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연장(2→3년)하고, 노인 기초연금 인상(月 32.3→33.5만원, +1.7조원) 등 소득보장 강화
- (장애인)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1:1 돌봄체계*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(5.8→6.4조원, +9.4%)
 - * 주간 개별 1:1(500명), 주간 그룹형 1:1(1,500명), 24시간 돌봄 전국 확대(1→17개 시도)
- (저소득층) 선정기준 상향(기준중위 30→32%) 등을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(4인가구 +21.3만원, +13.2%), 4.5만가구 신규 지원
 - * 생계급여 인상분(만원, 4인가구) : ('18)1.6 ('19)2.8 ('20)4.1 ('21)3.8 ('22)7.3 ('23)8.4 ('24)21.3
 -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·기저귀 月 지원단가를 1만원 인상(분유 10→11만원, 기저귀 8→9만원)
- (중장년)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·직업 훈련 강화 등 '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*' 마련('24.上)
 - *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서비스 대상(현재 40세 이상, 1년 이내 퇴직예정자) 확대,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개편 등 접근성 제고
 - 재취업 지원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(31→34개소)하고, '상담-생애경력설계-취업알선'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
 -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(20→25개소),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*
 - *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에 한하여 중위소득 요건을 80%이하 → 100%이하로 완화

◇ 소비·관광 활성화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,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

① 세제·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

- '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% 추가 소득공제 도입(별도한도 100만원)
 - 특히,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%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
- 노후차교체·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 추진
 - ① (노후차교체) 개소세를 △70% 한시 인하하고,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여 '24년에도 지원
 - ② (전기승용차)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하여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
 - * 지급 수준의 경우 업계 가격인하와 연계하여 '23.9~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(최대 100만원)를 감안하여 검토
 - ③ (고효율기기) 취약계층·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, 노후 냉·난방기 교체, 냉장고 문닫기 등 보급규모 확대
 - * 지원예산 : ('23) 806억원 → ('24) 1,498억원, 최대한 조기집행 및 필요시 추가 확대

②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·외국인 정책지원 강화

【 내국인 관광 활성화 】

- 여행가는 달 연 2회(2·6월) 확대 시행*,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조성·확산
 - *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할인, 교통 프로모션(KTX, 관광열차, 항공) 등 추진
- 숙박쿠폰·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*하고,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
 - * (숙박쿠폰) 9만장<'24년 예산> → 45만장 (근로자 휴가지원) 9만명<'24년 예산> → 15만명
-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

-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,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
-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*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

* ①지역 확대(5개도 → 전국), ②대상 확대(50→500채), ③증축 제한 완화 등

【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: 2천만명 달성 목표 】

- (비자제도 개선) 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,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(6개국)*로 확대(~'24.12월)

* ('23년) 중국 → ('24년) 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캄보디아

- (편의 제고) 교통·결제·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

- 코로나 이후 단체여행 소규모화(30명 이상→5~10명)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(승합차 등) 및 서비스 확충

*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(문체부·국토부 + 업계<여행, 전세버스, 렌트카 등>) → 렌트카 대여절차 간소화 등 여행업계의 소규모 교통수단 확보 애로 해소방안 마련

- 제로페이 - 해외결제사(7개)* 간 연동 및 가맹점 확대('24.1월~)

* 일본(디바라이), 대만(타이신, 제코, 이지), 태국(SCB), 라오스(BECL), 몽골(몬페이) 등

-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*하고, OTA(Online Travel Agency)·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**('24.1/4)

* (現) 관광호텔 → (추가) 한국전통·수상관광·의료관광·가족·소형 호텔, 호스텔, 휴양콘도미니엄

** (現)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→ (추가) OTA·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

-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*

* 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제주, 부산

- Duty-Free 페스타('24.5월)의 할인폭·기간을 확대(최대 20→30%, 31→40일)하고, K-pop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소비 확대 유도

- 코로나 시기('20~'22)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'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 검토

- (의료관광)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 추세를 감안하여,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* 방한 외국인 환자(만명) : ('15) 30 → ('19) 50 → ('20) 12 → ('21) 15 → ('22) 25

-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* 완화 검토

* (現) 의료관광 초청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

-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*를 마련하고,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(지역특구법)에 의료광고 허용 추진**

* (예)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, 검정시험 유효기간 신설 등 추진

** 지역특구법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

③ '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

【연간 수출 7천억불 조기 달성 지원】

- (인센티브)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('23년 345조원)하고, 2조원 규모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* 강화

* (예) 수출 급증 등 유동성 애로 → 대출·무역보험 한도 확대 + 수출팩토링 제공
업황 부진품목 수출업체 → 수은 대출금리 인하 등 비용부담 완화 지원

-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연장(~'24년)하고,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

-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('24.上 8척), 해외 거점 항만 內 물류센터 확충(LA, 호치민)* 등 물류지원 강화

* (現) 4개소(네덜란드, 스페인, 인니 등) → (추가) 미국 LA, 베트남 호치민 2개소

- 상반기 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예산 2β수준 집중 투입

- (애로해소) 수출 중소기업(수출/매출 비중 50% 이상)에 대한 법인세·부가세·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(~'24년)

* ①법인세 납부기한 연장(3→6월말), ②부가세 조기환급(15→10일), ③정기 세무조사 제외

- 기업들의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

* 상반기 중 관련법령 정비(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), 하반기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 개시

- 수출바우처 확대(1,441→1,679억원) 및 기업편의 제고*와 함께, 「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(분기별 1회)」 신설·운영

* (모집횟수) 年 1회(3월) → 2회(3·8월) / (지원분야) 유해물질 검사, 현지 사후관리 대행 추가
(발급액) 現 유형별 3~4개 중 선택(예: 3/4/5천만원) → 1천만원 단위 자율 선택
(수행기관) 바우처 등록기관 외 사용가능 분야에 법률·세무·회계 컨설팅 등 추가

- **(다변화)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*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,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확대**
 - * 평가방식 개선 : (現) 총 수출국가수 평가(7점) → (改) 신규 수출국가수 평가(10점)
 - **서비스 분야에 대한 코트라·중진공 등의 지원을 확대*하고,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보강('23년 11.8 → '24년 12.2조원)**
 - *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('23.12월)으로 인터넷 관련 정보 서비스업, 물류(창고업), 첨단 장비 사후관리(A/S) 등 서비스업 등도 무역금융·수출바우처·해외지사화 사업 등 우대 가능
 - **K-Food+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특화 물류체계 구축,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* 등 추진**
 - * 시범온실 : ('22년) 호주 → ('23년) 사우디 → ('24년) 1개소 추가 선정 예정
 - ※ K-Food+ : K-푸드(농식품) + 스마트팜·펫푸드·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
 - **글로벌 조달시장('21년 12.6조불)을 新수출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특화바우처를 도입하고, 해외실증 대폭 확대('23년 12 → '24년 50억원)**
 - **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 (CABEI 주관), 한-중남미 무역 포럼(IDB 주관) 등 추진**

【 인프라·방산·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 】

- **(금융지원)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* 및 출자 바탕으로 「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」 신설 검토 등 해외수주 전폭 지원**
 - * 관련 수은법 개정안이 既발의 중이며, 신속한 개정 추진
 - **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* 적극 유도**
 - * 필요시 기존 수주 관련 협의체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 →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 해소
- **(인프라) '27년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·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·추진**
 - * 해외건설 매출액 순위('23.8월, ENR) : ①중국, ②프랑스, ③스페인, ④미국, ⑤한국
 - **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 선진화(도급 → 투자개발)**
 - **제2 중동붐 확산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**

- ▶ (수주영업) 중동내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등 밀착 지원 인프라 확충
- ▶ (사업진행) KOTRA 현지대행 서비스 지원(시장조사, 현지 물자조달 및 채용지원 등)
- ▶ (인센티브) 시공능력 평가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

- **(방산) 방산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*로 지정하여 수주확대를 뒷받침**하고,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** 차별화

* 세액공제율(대/중견/중소, %) : (일반) 3/7/12 → (신성장·원천기술) 6/10/18

** 방산 선도무역관(23→24, 20→31개소), 거점국 중심 방산협력지원단 파견, 현지생산 지원 등

- **(원전)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**하고, 설비·운영·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 위한 **新프로젝트 발굴***

*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(24.上)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 추진

【 경제외교·통상협력 강화 】

- **(경제외교) 주요 국가·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**하고, 정상 순방 성과 창출·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 체계화

- **범부처 「글로벌 파트너십 실행·점검단*」을 신설·운영**하여 순방 성과가 국내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뒷받침

* 기재부 등 관계부처, 관련기관(수은·무보 등), 유관기업(필요시) 등

※ MOU체결 → 국내기업 연결 → 투자애로 해소 → 계약체결 → 실행 등 전주기 관리

【 주요 순방 성과 】

- ▶ (미 국) 이공계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착수, 우주항공청-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등
- ▶ (일 본) 청소년·유학생 교류 확대, 반도체 공급망 협력, 제3국 공동진출 등
- ▶ (영 국)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, 한영경제금융대화 개최 등
- ▶ (사우디)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, 자동차 공장 설립 등
- ▶ (카타르) 스마트팜 기술 협력, LNG 운반선 수주물량 건조 등

- **(통상협력) 양자·다자간 통상협력을 강화**하여 수출저변 확대

- 잠재력 큰 몽골·조지아·탄자니아·세르비아 등과의 경제동반자 협정(EPA) 및 **新통상환경에 맞춰 既 체결한 FTA 업그레이드*** 추진

* 예 : (對 영국) 제1차 개선협상 (對 칠레) 공급망 등 협력 확대

- IPEF 논의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산업·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개도국 조달시장 등 **新시장 발굴·선점**

- **(ODA) EDCF 지원을 역대 최대폭 확대**하고(+34.8%), **아프리카 등 예정된 고위급 교류의 성과 창출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**

* 정상외교 성과사업 사전 발굴,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등

- KSP·EIPP 사업 선정시, 우리 기업 해외진출 가능성, 공급망 기여도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선정

④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·금융·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

① (세제지원) 시설·R&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

-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(~'24.12월)

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, □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
	당기분(기본공제)			증가분(추가공제)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	1 → 3	5 → 7	10 → 12	3 → 10
신성장·원천기술	3 → 6	6 → 10	12 → 18	4 → 10
국가전략기술	15	15	25	

- R&D 투자(일반분야)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(최초 시행)
<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+10%p씩 상향, ~'24.12월>

일반분야 R&D투자 세액공제율(%)
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당기분	최대 2	8 ~ 15	25
증가분	25 → 35	40 → 50	50 → 60

※ 기업이 당기분/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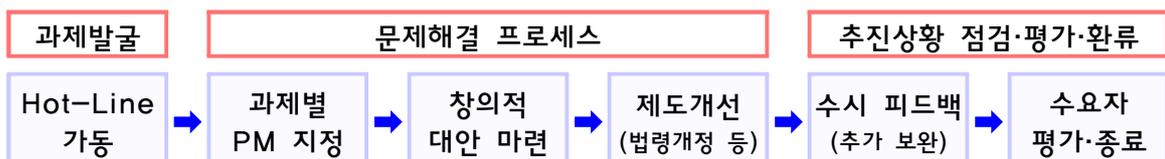
② (금융지원) 역대 최대인 52조원* 시설투자 자금 공급('23년 50조원)

- ▶ 기관별 공급규모 : 기은(23조원)·산은(22조원)·신보(4조원)·중진공(2조원) 등
- ▶ 주요 지원사업 : 최대 1.3%p 우대금리 지원 등
 - 반도체·이차전지·미래차·로봇 등 첨단분야 특별지원
 - 공급망안정 분야, 신재생에너지·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특별지원
 -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

③ (애로해소) 범부처 「지역투자지원 TF」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, 신속 가동 지원

- 경제단체·협회,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「투자 익스프레스」를 신설('24.1월)하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(3월)

* (중점 분야) 반도체·조선 등 주력산업, 데이터·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산업 등



5 역대 최대 외투 유치(350억불)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【 3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】

○ (지원체계)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Invest Korea 역량강화, 100대 핵심기업 선정·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

▪ 정상외교 등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,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·개선*

*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밀착지원 기능 강화 및 규제개선 성과 반기별 보고(현재 年1회)

○ (인센티브)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(500→2,000억원) 하고, 국가·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 상향(최대 40→50%)

▪ 지자체 재정자립도,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부담비율 상향

외투 현금보조금 국가-지자체 부담비율

현행 (국비:지방비)		개정 (국비:지방비)	
수도권	30 : 70	수도권	30 : 70
비수도권	60 : 40	비수도권	60 : 40
		기회발전특구	70 : 30

* 첨단연구개발(10%p),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기술 분야(20%p) 국비분담률 상향 가능(단, 한도 80%)

▪ 수은의 유턴·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지원(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△1.2%p 인하) 등 통해 신·증설 투자부담 경감

【 유턴 활성화 】

○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(570→1,000억원)하고, 국가·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*

* (現) 수도권 150억원, 비수도권 300억원 → (改) 수도권 200억원, 비수도권 400억원

▪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* 폐지

* 첨단기술 보유기업,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, 해외사업장 신·증설시 보조금 환수

◇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,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

① (거점지역) 일자리·교육·도심융합·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

- (초광역권 특화발전) 4+3* '초광역권 발전계획('23.10)'을 바탕으로 '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('24.3)
 - * 4대 초광역권(충청, 광주전남, 대구경북, 부울경), 3대 특별자치권(강원, 전북, 제주)
- (권역별 거점 육성) 지역 주도의 투자·일자리 창출, 교육 발전, 복합개발,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 본격 조성
 - ① (기회발전특구)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('24.上)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'기회발전특구 특례*' 도입 추진
 - * 지자체가 기업투자 경영활동 제약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 →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특례 부여
 - 기업 이전수요 확대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비율* 5%p 상향
 - * 중소·중견기업에만 지원되며, 지역에 따라 중소(9~50%), 중견(10~25%) 지원 중
 - ② (교육발전특구)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지원 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('23.12월 공모) 지정·운영('24년~)
 - * 시범지역 지정시 3년간 운영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거쳐 공식 지정여부 결정
 - ③ (도심융합특구)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추진(기본·실시계획 승인, '24.下) 으로 일터(지역별 특화산업 육성), 주거·여가시설 등 복합 개발
 - * 도심융합특구 내 여타 특구 중복지정 근거 마련('24.上,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)
 - ④ (문화특구)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(총 13곳*)는 1년간 예비사업 추진,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'24년말 최종 지정
 - * 대구(수성구), 부산(수영구), 경기(안성시), 세종, 충북(충주시), 충남(홍성군), 강원(속초시), 경북(안동시), 경남(진주시·통영시), 전남(순천시·진도군), 전북(전주시)
 - ⑤ (글로벌 혁신 특구)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 위해 금년중 특구 3곳 추가 지정(現 4곳*), 첨단분야 규제혁신 지속
 - * 충북(첨단재생바이오), 전남(에너지신산업), 부산(차세대해양모빌리티), 강원(보건의료데이터)
- (특구 효율화) 부처별로 운영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 점검 등을 거쳐('24.上 연구용역) 「특구제도 합리화 방안」 마련('24.下)

2 (인구감소지역) 「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」 추진

【 ① 생활인구 확대 : 세컨드 홈 활성화 】

-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*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·거래 인센티브 확대

* 가액,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

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

재산세	<p>▶ (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+ 인구감소지역 1주택) 1세대 1주택 특례* 적용 * 세율 인하($\Delta 0.05\%p$),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</p> <p>※ (사례) 수도권 1주택(9억원 이하)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- (현행)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- (개선) 1주택 보유자로 취급,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</p>
중부세	<p>▶ (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+ 인구감소지역 1주택) 1세대 1주택 특례* 적용 * 기본공제 12억원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</p> <p>※ (사례)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- (현행)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- (개선)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</p>
양도세	<p>▶ (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+ 인구감소지역 1주택)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* 1세대 1주택 비과세(12억원 이하) 등</p> <p>※ (사례)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- (현행)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- (개선) 1주택 보유자로 보아,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</p>

【 ② 방문인구 확대 : 관광인프라 조성 】

- (관광기반 확충) 미니 관광단지 신설(기존 50만 m^2 이상→신설 5~30만 m^2), 지정·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(시·도지사→시장·군수)

* 관광단지 혜택 : 기반시설 우선 설치, 인허가 의제, 토지 수용·사용, 개발부담금 면제 등

-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,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·연계하여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지원
-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* 운영

* 단장 : 문체부 2차관, 기재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해수부 등 참여

- **(금융)**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용자조건을 우대*하고, 관광기금 용자의 지방 우선배정(60%이상 목표) 추진

* (금리) 최대 $\Delta 1.25\%p$ 우대금리 적용(일반 중소기업 $\Delta 0.75\%p$ 의 1.7배)
 (한도) 최대 300억원까지 용자(일반 한도 200억원)
 (순위) 동일 조건 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투자 사업체에 우선 용자

-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 강화*

*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%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

- **(세제)** '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,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

-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%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

※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('24.上, 행안부 고시 개정)
 (現)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,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
 (改) '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 추가

- **(재정)**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, 지자체간 경쟁·협업 촉진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*('24.上)

* 배분 격차 확대('23년 : 최대 56억원 → '24년 : 최대 80억원), 사업 간 연계 시 평가 우대 등

【 ③ 정주인구 확대 :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·어촌 활력 증진 】

- **(외국인)**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참여지역*('23년 28개 지자체,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개 모집중) 및 쿼터(現 1,500명) 확대 추진

- **(농·어촌)**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,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('24.上)

- 민간투자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, 창업·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'수산업·어촌 활력 제고방안' 마련('24.上)

- **(의료)** 의대 입학정원 확대('25년~)와 연계하여 지역·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* 마련('24.上)

*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, 근무·정주여건 개선 등

③ [건설투자]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

【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】

○ (중앙) SOC 사업(25.0→26.4조원)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(65%) 추진

*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9) 61.0 ('20) 62.0 ('21) 63.0 ('22) 63.0 ('23) 65.0 ('24) 65.0

▪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*,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,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(~'24.6월)** 등으로 신속집행 지원

*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('23.12월), 인·허가 등 사전절차 조기 완료 등

** 선금지급 한도 확대(70→80%), 입찰공고기간 단축(7→5일) 등

○ (지방) 교부세·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, 선금급 집행 활성화,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(60%) 추진

▪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(기재부·행안부·교육부)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집행 권고

▪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 마련*

* (예)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율경감, 세액감면 등을 추진한 지자체에 적용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감면규모 내 교부세 페널티를 既 폐지

▪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 적극 검토

○ (공공투자) '24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(55%)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

* 사업 단위로 투자계획 단계부터 주기적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적극 해소

○ (민자사업) 민간 참여유인 제고* 등을 통해 '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(13 → 13.7+a조원)

* 도로 확장,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

- (지역활성화투자펀드) '24.1월부터 펀드*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의 시장성·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

* 정부·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 조성(年 3천억원) + 지자체·민간이 자펀드 결성, SPC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

【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】

- (한시적 규제유예)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재도입(과거 '09년, '16년 2차례 시행)

-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'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%, 학교용지부담금 50% 감면

* (개발부담금) '14.7~'18.6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시행 (학교용지부담금) 최초 감면

-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('24→'25년)

- 향후 쏠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(국조실, '24.上)

- (권한이양) 제1차 이양 과제(57개)*를 신속 추진·완료(~'24上)하고,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

*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,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

- (부담완화) 준공후 미분양,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·규정정비·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 강구

* 전체 미분양(천호) : ('23.6) 66.4 (7) 63.1 (8) 61.8 (9) 59.8 (10) 58.3 (11) 57.9

준공후 미분양(천호) : ('23.6) 9.4 (7) 9.0 (8) 9.4 (9) 9.5 (10) 10.2 (11) 10.5

- 국민·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여 경감 방안 마련, 납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* 추진

* 부과 원칙·기준 명시, 신설 시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

【 주택공급 활성화 】

- (공공부문 공급 가속화)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

-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 단축

-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*, 공정관리 등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'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** 추진, 기타 신도시*** 공급 가속화

- *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위해 공사채 발행지원(예: 지자체 출자확대 등 자구책下 자기자본 상한 발행지원 등) + 신도시 사업지역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 추진

- ** 인천계양(1.7만호), 고양창릉(3.6만호), 남양주왕숙(6.6만호), 하남교산(3.3만호) 등 4개 지구 → '24년 내 조기 주택착공 추진

- *** 추가 인력·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신도시(7만호) 지구 등 착공일정 단축(약 6개월) 기대

- 뉴:홈은 '24년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 실시

-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('24.1월, 국토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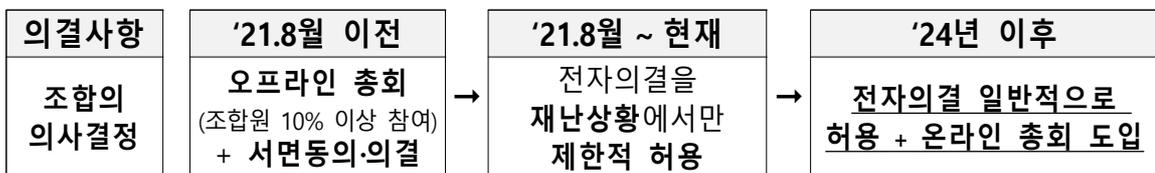
- (민간 애로해소) 인허가 절차 간소화, 공사비 분쟁 완화,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

- 주택공급 인·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*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·허가 전 완료**될 수 있도록 관리

- * 건축심의, 도시·군관리계획, 광역교통대책, 교통영향평가, 경관심의 등 한번에 심의

- ** 교육영향평가 관련 건축허가 통합심의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

-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하여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('24년 시행추진)



- 공사비 갈등발생시 분쟁조정제도*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** 창출 추진

- * (계약前) 컨설팅 지원, (계약中) 표준계약서 활용, (계약後) 도시분쟁조정위 조정

- ** (예) 민관 합동 PF 조정위 통해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공사비 분담 방안 마련 등

-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 확대('23년 3,220명 → '24년 6,000명)

2. 잠재위험 관리

1 부동산 PF 연착륙

◇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,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

- (유동성 공급)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·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
 -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*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, 필요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
 - * '22년말 50조원+α 프로그램 가동, '23.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통해 85조원 수준으로 확대
 -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*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
 - *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, Equity 출자 등 시행
 -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(6조원), 비주택 PF 보증 신설(4조원), 건설사 특별융자(0.4조원) 등 건설공제조합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
- (PF사업장 정상화)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,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·지원 강화
 -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,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
 -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, LH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 검토
 - * LH가 사업성 검토후 매입 →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·건설사에 매각 추진
 -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, PF 정상화 펀드(2.2조원)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조속한 정상화 지원
 - 캠코-민간 공동출자 'PF 정상화펀드'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(~'25년) 취득세 50% 감면(지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제)

- (제도 개선)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*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

* 기재부·국토부 공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진행중(KDI·조세연·국토연, '23.10~'24.4월)

-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('24.1/4)

- (부동산시장 정상화) '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(시행령 개정 등)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

	개정안 주요 내용	후속조치·시행시기
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	▶ 재초환 분담비율(10~70%) 구간 확대 ▶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 도입	▶ '24.3월 시행 예정 (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마련 등)
노후계획도시 특별법	▶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용적률·안전진단 등 인센티브 부여	▶ '24.4월 시행 예정

-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(~'24.5월) 1년 한시 연장

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

◇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

- (양적 관리)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, '27년까지 GDP 대비 100% 이내로 관리 추진

* 가계부채/GDP 비율(% , BIS) : ('17) 89.4 → ('21) 105.4 ('22) 104.5 ('23.2/4) 101.7

- 「주택정책금융 협의체(기재부·금융위·국토부 등)」를 운영하여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 강화
-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범위 확대 검토 (DSR 적용 예외항목 점검 등)

- (질적 개선)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, '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% 수준으로 상향 관리

*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(% , 잔액기준, 금감원) : ('21) 45.2 ('22) 45.5

-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*를 강화하고,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 반영

* (예) 고정금리 목표 달성시 출연요율 우대 강화, 변동금리 과다 취급시 출연요율 부담 강화

-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(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부과)하고 변동 →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
-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* 마련('24년)

* (예) 예수금 인정한도(발행규모의 1→2~4%)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(現 최대 △6bp) 확대 등

3 공급망 안정 확보

◇ **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, 공급망 다변화·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 강화**

- (대응체계) 공급망위원회(정책 심의·조정) 신설, 신속대응반(한국형 Strike Force) 운영, 기금 신설 등 통해 공급망 위협에 적극 대응

* 제2의 마스크·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

- 조기경보시스템(4천여개 품목)을 가동, 위기징후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(비축·국내생산·수입선 다변화·외교대응 등)에 따라 신속 대응
-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,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* 조성 통해 핵심소재·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 추진

* 상반기중 국회 보증동의, 전담조직(수은)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 통해 하반기 운용 개시

- 국내기업의 해외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(M&A)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발굴경로 다양화

* KIC 본사 및 현지 정보를 갖춘 해외 지사 적극 활용, KIC-공공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

- ※ 경제안보품목 재정비, 공급망 역량 강화,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「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」 수립('24.上)

- (공급망 다변화) 금융·세제·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

-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(20→22조원) 하고,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*를 '24년까지 연장

* (당초) 포지티브 방식(철·동·아연 등), 50억원 한도 → (확대) 네거티브 방식, 100억원 한도

-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*를 도입하고, 해외자원 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(70→80%)

* 대상: 광업권·조광권 취득 위한 투자·출자, 내국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

- (자원 안보)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
 -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 (예: 경질유 확대)하고, 국제 공동비축사업* 통해 비축비용 경감
 - * 산유국 잉여원유를 국내에 저장시켜 보관품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 및 보관료 수취
 -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대, 신규품목의 원활한 비축 위해 우선사용권·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 확대

4 금융 안정·건전성 제고

◇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, 금융기관·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

1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

- (자금·채권시장)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*를 연장(~'24.上)하고, 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·시기 조절** 등 추진
 - * 은행 LCR(100→95%), 저축은행 예대율(100→110%), 여전사 원화 유동성(100→90%) 등
 - ** 국고채 연간 순발행 11.6조원 축소, 연간 균등발행 및 분기별 발행계획 사전 공개 등
 - 국채통합계좌 개통('24.6월)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,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을 지속 추진
 - P-CBO 신규공급 확대(2.8→3.2조원) 통해 기업자금조달 지원
 - 공공기관·금융회사·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분산을 유도하고,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(0.5%) 일몰(~'24.8월) 연장
- (주식·외환시장)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, 글로벌 수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본격 시행

- ▶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: 불법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
 - 공매도 전산화, 대차·대주 상환기간·담보비율 차이 해소, 공시대상 확대, 제재·처벌 강화
 - ※ 민당정협의회(23.11.16)에서 논의한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·공론화 통해 보완
- ▶ 외환시장 구조개선 : 시장 개방, 개장시간 연장, 거래편의 제고 등
 - 일정 요건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('24.1월부터 시범운영)
 - 개장시간(現 9:00~15:30) : **익일 02시까지 우선 연장**('24.1월부터 시범운영, 7월부터 시행)
 - 外人투자자 원화환전 편의제고(결제절차 및 절차별 확인주체 명확화 등 외국환거래규정 정비)

② 시중은행·상호금융·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

- (은행) 자본버퍼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(CCyB)을 적립 ('24.5월~, 1%)하도록 하고, 스트레스완충자본* 제도화 추진
 - * '23.9~12월 중 시범운영 실시 →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과 수준·방식 등 검토
- (상호금융) 부동산·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시행('24.下)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조합의 손실부담능력 제고
 - * 부동산업·건설업 여신을 각각 총대출의 30% 이하로 제한(합계액은 총대출의 50% 이하), 부동산업·건설업 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 100→130%로 단계적 인상('24.6/12월 '25.6월 각각 +10%p)
- (저축은행) 연체율 관리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*
 - * 예: (現)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만 매각 (改)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캠프, 다른 SPC 등에 제한적 매각 허용

③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

- (부실방지) 취약업종*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** 대상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 우려기업 선제적 관리
 - * 대상확대(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 연속 3년 → 2년) ** 신용위험평가지 자구계획 징구
- 진단 결과 토대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속 금융지원 강화(신용보증 지원한도 10→15억원)
- (사업재편)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(동반성장종합평가지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 가점 부여 등)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 촉진
 - 부실징후기업,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,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 추진
 -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확대(980→1,193억원)하고, 하반기 중 '기업구조혁신펀드('24년 조성, 1조원)' 투자 개시
- (회생지원) 취약·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신속화 및 개선
 - 중소기업 및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신속화*
 - * 채권자목록 사전제출 허용, 간이회생개시 결정에 요구되는 최소 부여기간 임의화
 - 회생신청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* 추진
 - * 회생신청으로 인한 기업의 기존 계약 해지 방지 방안 등 검토

3. 역동경제 구현

❖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①혁신 생태계 강화, ②공정한 기회 보장, ③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

⇒ 조속한 성과 창출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,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연속해서 발표

※ 기재부·한은·KDI 등이 공동 작업중인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분석 및 제고방안과 연계 추진

1 혁신 생태계 강화

◇ 규제혁신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

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

○ (입지규제) 개발제한구역·농지·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

① (개발제한구역) 지역(비수도권 한정)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

② (농지) 소멸 고위험 지역에 (가칭)자율규제혁신지구(농촌형 기획 발전 특구)를 도입하고,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* 추진

* (예)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 허용

③ (산지)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, 국민편익·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하여 산지이용 확대*

* 단,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지규제 개선 추진

○ (킬러규제) 「킬러규제 혁파 TF」 등을 통해 10대 분야*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·개선 노력 지속

* 접경지역 입지규제, 인증규제, 조달규제,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, 환경배출 규제 등 분야

▪ 입지·고용·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·개선*하고,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 추진

* 경제규제혁신플랫폼 신설 : 규제개선 과정·결과 공개, 현장에서의 작동여부 점검 등

○ (규제샌드박스) 신산업 분야 제품·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('24.1/4) 추진

* ①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, ②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, ③안정성이 입증된 사업·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

② 첨단산업 클러스터, High5+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

- (클러스터 신속 조성)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*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

* 국가첨단산업단지,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, 소부장특화단지, 연구개발특구 등

단지 조성 단계	단계별 주요 지원필요 사항 (예시)
● (①단계) 산단계획 수립前	사업타당성조사, 예비타당성조사 등
● (②단계) 산단계획 수립·승인	환경영향평가, 규제협의 등
● (③단계) 부지 확보·착공	토지 수용 관련 협의, 지자체 인허가, 기반시설 조성 등
● (④단계) 기업 입주	정주여건 조성, 산단 운영 지원, 사업지원 등

-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·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

-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('24.1/4)하고,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첨단특화단지 추가 지정('24.上)

-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 감소한 지원 한도 차등화, 한도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, 지원비율 상향 검토

* '24.1/4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관련 고시개정 추진(산업부)

-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* 마련

*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 검토,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 확대

- (High5+ 집중 육성)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(디스플레이 포함), 이차전지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,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- 첨단산업 분야 R&D·시설투자 촉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적용 확대

- High5+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+a 규모 정책금융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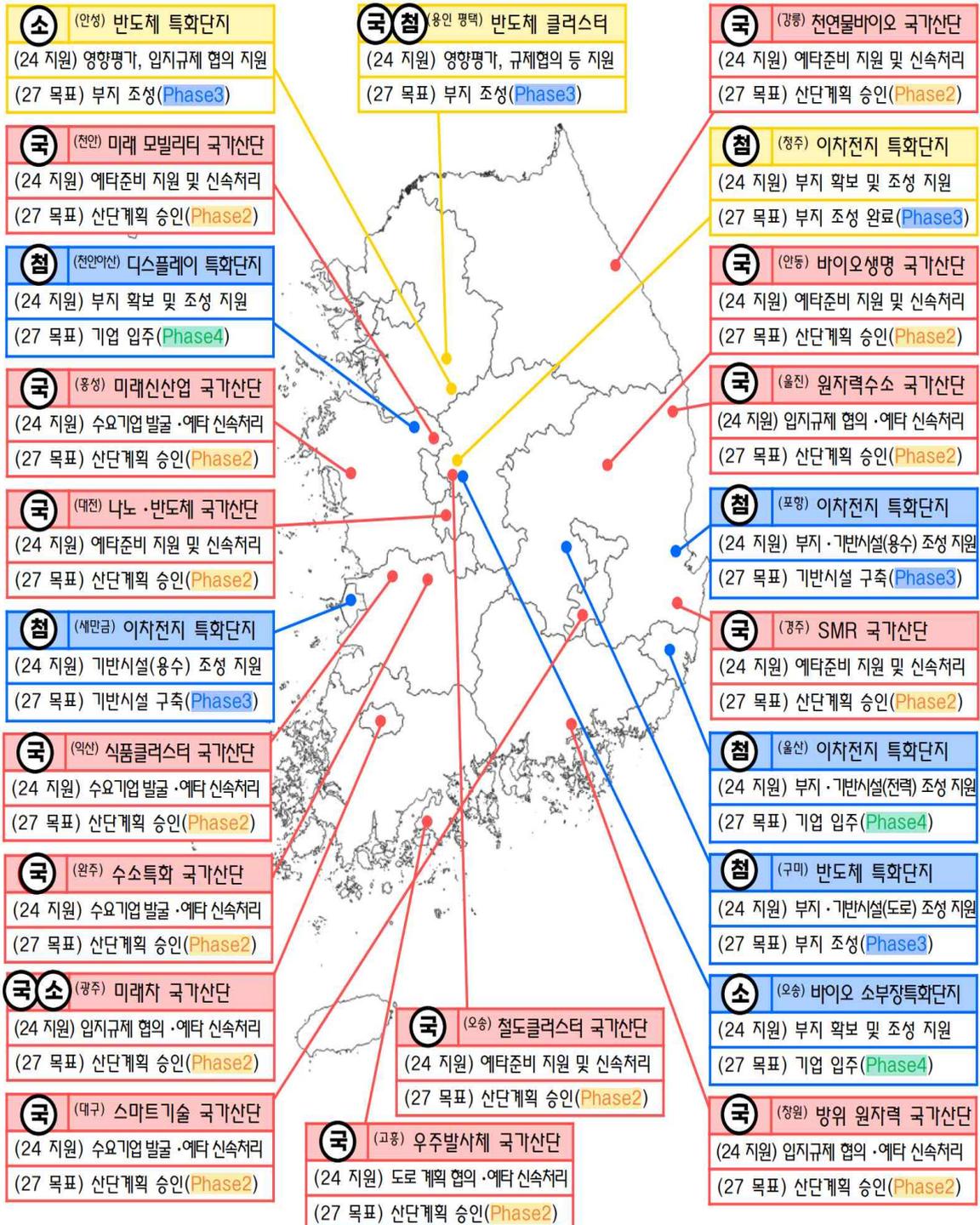
*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 확보

- 既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·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, '24년 중 3조원 추가 조성

첨단클러스터 현황 및 맞춤형 지원계획

국 국가첨단산업단지 15개 중 Phase1 14개, Phase2 1개	○ (Phase1) 산단계획 수립 전(사업타당성조사, 예비타당성조사 등)
첨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7개 중 Phase2 2개, Phase3 5개	○ (Phase2) 산단계획 수립·신청·승인
소 소부장특화단지 10개 중 Phase1 1개, Phase2 1개 Phase3 1개 * 기업입주 완료(Phase4) 2개(부산, 대구) 단지 및 기지정된 5개 단지 미표기	○ (Phase3) 부지 확보·착공·조성, 기반시설 조성
	○ (Phase4) 기업입주, 클러스터 조성 완료

※ 연구개발특구, 송도 바이오클러스터·오송 3산단 등 바이오 단지, 글로벌혁신특구 등 첨단산업 관련 단지들도 함께 검토



- (신성장 4.0) 15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,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*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 확충

* 과제별 민관협의체,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·제도개선 추진

- ▶ (新기술 확보)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 착수,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등
- ▶ (新일상 확산)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('24년 200억원 출자), 산업·안보 분야 전략적 R&D 투자,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등
- ▶ (新시장 육성)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 개장,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운항 실증, K-콘텐츠·미디어 전략 펀드 신규 조성('24년 800억원 출자) 등

- (제도개선) 첨단산업 기술보호 위해 해외인수·합병심사 강화,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상향 조정('24.1/4)

▪ 첨단산업 규제환경 평가 위한 '첨단산업 규제지수' 개발 추진

③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&D 혁신

- (출연연 혁신)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하여 인력·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

▪ 국가적 역량 결집 및 대형성과 창출 체계 전환*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예산('24년 1천억원) 도입·확대 추진

* NTC(National Technology Center) :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으로 예산·인력을 운용하고 국내외 산·학·연간 협력하는 체계

▪ 출연연의 핵심인재 영입 위한 특별채용 제도 도입, 효과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소출연연 차원의 통합적 정원 활용* 추진

* 통합정원제 : (現) 연구기관별 정원 심의 → (改) 소출연연 차원에서 정원 분배·활용
(예) 우수연구원(장기근속 고성과자): (現) 연구기관별 연구직 10% → (改) 소출연연 10%로 운영

- (글로벌 R&D 확대)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&D 투자를 대폭 확대 (0.5→1.8조원)하여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 증대 및 역량 강화

▪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시스템*을 구축하고, 해외연구기관**의 정부 R&D 직접참여 허용

*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 마련 및 연구과제 보안등급 세분화 등

** (現) 간접참여(국내기관 위탁 등) → (改) 간접참여 + 직접참여(주관·공동연구 기관)

- 우수 연구자·기업 등의 글로벌 R&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수 확대* 및 연구비 인센티브 제공**

* (공동연구자) 5 → 6개, (연구책임자) 3 → 4개

** 글로벌 R&D 수행기업의 매칭부담금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부분은 매칭 제외

- 상대국 예산제도 등에 따라 '연구과제 연중 상시 착수' 등 탄력적 R&D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*

*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 개정('24.上)

【 주요 글로벌 R&D 프로젝트 '24년 계획 】

- ▶ 한-미 우수병원 간 협력, 디지털바이오·암 분야 공동연구,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등 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 신속 착수
- ▶ 한-네덜란드 첨단반도체 대학원 공동 교육과정 개설('24.2월)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('24~'28년) 양국 석박사 고급인력 500명 양성
- ▶ 3대 주력 기술(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) 분야 해외 현지 R&D 협력센터 신설('24.下)

- (민간투자 촉진)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*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&D 참여를 촉진하고,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

* 납부 요율 및 총납부액 한도 하향 조정,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 적극 도입 등

- 글로벌 R&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*

* 글로벌 R&D 센터 입주 지역·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, 건물 임대료 감면을 상향(50 → 75%) 및 감면기간 확대(5 → 10년)

-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지원 체계화(지원법 제정), 주문연구서비스 고도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('24.上)

- (체계혁신)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, 도전적·성과창출형 R&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·평가 등 개편

- 도전적·혁신적 R&D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, 도전적·혁신적 R&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·면제 적극 인정*

* 에타 면제 대상에 도전적·혁신적 R&D 추가(R&D 에타 운용지침 개정, '24.1/4)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확정

- 도전적·혁신적 R&D 위한 연구시설·장비 구매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조달구매 소요기간 단축(약 120 → 50일)

-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(최소 1억원) 이상으로 확대*하고, 분산·파편화된 R&D 사업수를 20%까지 단계적 감축 추진
- * 다만, 순수이론 연구, 학생·포닥 연수지원 등은 소규모 연구 유지
- R&D사업 성과평가지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, 하위 20% 사업 구조조정 및 우수연구자 성과보상 강화(기술료의 50→60%)

4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

【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】

- (생산성 향상) 「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」을 제정('24.下)하고, 중소기업 성장 쏠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
 -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·R&D·인력 등 특례 지원*과 함께,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
 - * 중진공 자금 지원,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, 외국인 인력 체류기간 별도규정 등
- (중소→중견 성장)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·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*(3→5년)
 - *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
 -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('24년)
- (글로벌 진출)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(중진공), 글로벌파트너링센터(KOTRA) 등 확충
 - *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개소(인니), 글로벌파트너링센터 2개소(일본, 스웨덴) 추가 계획('24년)
- (지원 효율화) 재정·금융 등 정부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의 선별역량 활용*, 성장성·지원사업 효과성 등의 체계적 분석 시스템 마련
 - * TIPS(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) 확대, 지원대상 선정시 업계전문가 참여비중 상향 등
 - * 중소기업 정부지원 개선대책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('24.上)

【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 】

- (로드맵 마련) 벤처기업법 상시화('24.7월~)에 따라 중·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「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* 수립('24.7월)
 - * 민관합동 TF 운영, 벤처이력기업(12.8만개) 재무정보·성장주기 등 분석 토대로 글로벌·신산업 진출 지원 전략 등 마련
- (투자촉진)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 강화
 - 「스타트업 코리아펀드」 조성(~'27년, 2조원)을 지원하고,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기반 마련 및 펀드 운용여건 개선
 - 모태자펀드에 위탁된 투자대기자금의 투자실행 유도를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 상향, 출자비율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
 -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
 -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→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
 - *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(現1년)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
- (애로해소)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* 및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** 등 벤처·창업기업 경영여건 개선 지원
 - *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(파산·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) 대상 확대
 - **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강화
 - (現) 3년 경과 후 → (改) 즉시 인정<단, 혁신성 인정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시>
- (M&A 활성화) 규제완화, 세제지원 등 통한 M&A 활성화 유도
 -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(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)
 -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* 및 종합금융투자사의 M&A 관련 대출규제** 완화 등 M&A 제약요인 개선
 - * (現) 시가 원칙으로 ±30%내 할인·할증 → (改)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
 - ** (現) 최초 대출만 추가 신용공여 허용 → (改) 리파이낸싱시에도 허용(만기 3년 내 대출)
 -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(~'23년→~'26년)

5 유망·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

- (기반조성) 수요기반 확대, 전문인력 확보, 지원체계 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보강
 - 공공수요 확대 및 新서비스 창출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*을 마련(24.1/4)하고,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
 - *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운영, 정보화사업 분야별 평가제도 세분화 등
 - 실태조사 바탕으로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(24.下)
 - '서비스 현장점검반(가칭)'을 운영하여 수요·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, 업종별 현장애로 해소
- (산업육성) 서비스 TF 중심으로 콘텐츠·금융·바이오헬스·관광·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(24.上)
 - (청년친화) 웹 기반 창작서비스, 웨딩, 이·미용 등 생활밀접 및 취·창업 선호도가 높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*
 - * 2030 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 서비스 분야 선정 및 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
 - (콘텐츠)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*을 추진하고,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(24.1/4), 제작사 IP 확보방안 마련
 - *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(기보) 지원 대상에 영상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추가
 - (MICE) 「MICE 육성 기본계획」을 수립하고(24.上),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경단녀 등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계약제도 개선 추진
 - (바이오헬스) 규제샌드박스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*를 추진하고, 첨단재생의료·의료 AI 등 융복합 기술 육성전략 수립
 - * (예) 병원 진료정보를 개인 동의하에 플랫폼 기업에 직접 전송
+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용성 검증
 - (푸드) K-미식벨트 조성으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고, 향토음식 발전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'향토음식 진흥센터' 설립 추진
- (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)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

◇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·제도 혁파

①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

-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 조사 및 개선 추진
 - 주류 제조·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* 추진
 - *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,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
- 금융권 경쟁촉진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*, 은행 경영현황 공개** 등 추진
 - * (현행) 가계신용대출 → (개선) 가계 주담대·전세대출까지 확대
 - ** 은행별 이익, 배당, 성과금 및 퇴직금 지급 등 경영현황 담은 보고서 매년 공개('24년~)
- 영업장 운영시간,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영업기회 제공
- 디지털헬스케어,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* 창업·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
 - * (디지털헬스케어)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·평가대상 확대 검토, 임상시험 등 규제합리화 등 (모빌리티)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, 수소·전기차, 드론 등 활용 확대 위한 규제완화 등

② 독점적·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·불법 행위 방지

- (플랫폼) 플랫폼 - 입점업체·소비자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,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 방지
 - 플랫폼 상생협력 성과 촉진 위해 정부의 지원·역할 강화*
 - * (예) 플랫폼 상생협력 논의대상 및 기한 제시, 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원
→ '(가칭)플랫폼 상생협력 모범기준(案)'을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실천 유도
 -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
 - * 자사 우대, 멀티호밍 제한(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) 등

- **(프랜차이즈)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을 추가하고,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시 협의절차 의무화**
- **(금융)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, 처벌 및 범죄이익 환수,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쏠 단계에 걸친 범정부 대응 강화**
 -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·구형기준을 상향 추진하고,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* 등 피해자 구제 강화
 - *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·소송 진행(<'23> 8.9 → <'24> 12.6억원)
 - 범죄정보 공유 확대(금감원·경찰청→국세청)를 통해 불법수익 추적 강화 및 세무조사부터 체납·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

3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

- **(임금체계)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,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,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「이중구조 개선대책」 마련('24.上)**
 - *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·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구체화
 - 조선업 상생협약('23.2) 사례를 참고하여,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·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자율 확산*
 - * (예) 석유화학산업('23.9), 자동차산업('23.11) 상생협력 확산 공동선언
 - 직무·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신설하고,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추진
- **(최저임금) 최저임금위원회 다양성·전문성을 강화하고,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점검·권리구제* 지원**
 - * 노동법률 전문가를 통한 최저임금 등 노동권 침해 특화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
- **(근로시간) 대국민 설문조사·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·사·정 대화를 거쳐 「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」 마련('24.上)**
 -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, 우선적용 업종·직종, 연장근로 관리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
- **(노사법치)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·부당행위를 근절하고,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**

④ 대·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

- (상생협력)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위해 연동확산지원본부* 등을 중심으로 약정체결 관련 교육·컨설팅, 원가분석 등 지원
 - 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한국공정거래조정원
- 대·중견·중소기업의 발주서만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초단기·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'동반성장 네트워크론' 신설('24.1월)
-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도* 개선** 검토
 - * 순제조원가의 0.5% 초과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%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 계약금액 조정
 - ** 제도현황 분석 및 품목별 표준규격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4년)
- (사회공헌)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
 - (개인)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(年 0.5→2천만원, '25년) 추진
 - (공공기관) '24년도 경영평가지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 강화*
 - * 세부 평가지표 신설: 「기부·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·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」
 - (경제단체) 지역사회 활성화, 아동 돌봄,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의 '공동 프로젝트' 추진
 - * (상의) '다함께 나눔 프로젝트' 확대(年 3→4~5회), (한경협) '가칭'아이가 행복한 세상' 추진
- (ESG 확산) 글로벌 정합성 및 국내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 마련('24.1/4, 초안 발표)
 - 국내·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해 컨설팅·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
 - * 사내전문가 교육(150社), 찾아가는 ESG 교육(30社) 등
- (경제교육)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통해 공공(기재부·한은 등)*과 민간(한경협 등 경교협 참여 단체) 부문의 교육자료 연계 제공**
 - * 기재부(경제배움e), 한국은행(경제교육) 등
 - **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(시장경제, 기업가정신, 노후대비, 신용관리 등)

◇ 청년·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,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계층간 이동성 강화

※ 상반기 중 일자리·교육 등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마련

① 청년·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○ (청년) 「공공기관 채용박람회(1월)」 통해 정보제공·컨설팅 등을 지원하고,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'23년 수준(2.2만명) 이상 확대

▪ 구직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청년층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,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(2→5년)

▪ 지역 中企 -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* 마련 추진

*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, 청년유입 유도 등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등(24.上)

○ (여성) 경제활동 촉진 위해 「가칭 일-가정 양립 지원방안」 마련(24.下)

▪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

▪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* 통해 육아·근로 병행 환경 조성,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 및 유망분야 직업훈련 확대

* [근로자 지원] (대상) 자녀연령 8→12세 (급여) 주 5→10시간 (사용기간) 최대 24→36개월 [사업주 지원] 사업주가 '단축근로자 업무 분담자'에게 금전 보상시 月 20만원 보조

②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

○ 영재교육·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사다리 확충

▪ 소외계층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'영재키움 프로젝트' 협력기관을 확대*하는 등 영재교육 확대방안 검토

* (現) 카이스트 → (改) 과기특성화대, 거점 국립대 등

- '24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*한 가운데, 향후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개선 및 꿈사다리 장학사업**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

* 국가장학금 I 유형·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(기초·차상위 첫째 年 700만원 → 등록금 전액) 등

**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우수 중·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
- 사내대학 설립·운영규제*를 완화하여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고, 이를 통해 취업 후 직무역량 배양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

* 입학대상 확대(당사+하도급기업 → 동종업종 추가), 학위과정 확대(학사 → 석박사 과정 추가)

③ 고용·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

- (고용안전망)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, 실업급여 제도는 '노동시장 참여 촉진형'으로 개선

- 사각지대 해소,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*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

*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(근로시간→소득)하고,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사각지대 해소

-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 개선 검토('24.上)

- (사회안전망)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·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

-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, 지역 인적망·ICT 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현장발굴 강화

- (근로연계 복지)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,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근로장려금(EITC) 개선 검토

- 자활참여자 단계별 맞춤형 직무교육,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고, 인력 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확대 추진

4. 미래세대 동행

❖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 위한 「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」 마련('24년)

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

◇ 재정준칙 법제화,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

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

-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, '25년 이후 예산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 차단
- 국가-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*하고, 부정수급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
*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 시스템) - 보탬e(지방보조금 시스템) 간 데이터 연계

② 지속가능한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제도 구축

- (국민연금)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
- (건강보험) 「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('24~'28년)」을 수립하고,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, 지출 효율화 등 추진

* 「가칭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」 및 「재정추계 실무단」 운영('24.1월~)

- 관계부처 협의체(기재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조실 등) 통해 국민연금·기초연금·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 논의

- 임신·출산·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*을 강화하고, 쏠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

* 난임시술 지원확대(21→25회,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),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실시 등

-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,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 신설*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 추진

* (現) 진료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 → (改) 과다·부적정 이용시 적용 제외

- 직장·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·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

2

인구·기후 위기 대응

- ◇ **외국인 정책 선진화, 출산·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고,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**

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

- **(유입) 산업·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10만명 수준 대폭 확대('23년 17.2만명 → '24년 26만명+α)**

비자 종류별 외국인력 유입규모

	합계	비전문(E-9)	숙련기능(E7-4) 전환	계절근로	신규분야 전문인력(E-7-3)
'23년	17.2	12	1.2	4	-
'24년	26+α	16.5	3.5	5.9~6.9	α

- **첨단분야 인재 유치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, 우수인재 영주·귀화제도 개선방안 마련('24.上)**
- **사이언스카드* 우대요건 완화**** (배우자 취업, 부모초청 소득요건 완화 등)
 - *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
 - ** 배우자 취업허용(전문직 이외 분야 포함), 부모초청 소득요건 완화(우리나라 GNI 2배→1배) 등
- **(취업) 중진공·산단공 취업·인턴설명회 개최,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선(Study in Korea 사이트) 등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 확대**
 -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기간 연장(최대 2→3년), 취업 허용 분야* 확대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유제 완화
 - * (現) 사무직·전문직 분야(E1~E7) 한정 → (改) 구인난 심각 산업분야 취업 허용
- **(정주) 비전문인력(E-9)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('24.上), 숙련기능인력(E-7-4) 장기근속 유도방안* 등 마련, 안정적 생활 지원**
 - * 동일기업 장기근속시 가점(現 3년 이상 근속시 20점) 확대 등
- **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고,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 사회통합정책 관련 컨설팅 실시('24.上)**

② 결혼·출산·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

- **(정책지원)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 토대로 예산·세제 우선순위 재조정 통해 범부처 협업하 마련중인 저출산 대책 적극 뒷받침**

- **(부담경감)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***,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 확대** 등 혼인·출산에 대한 재정·세제 지원 확대
 - * 혼인전후·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(0.5→1.5억원)
 - ** (부모급여) 월 35~70 → 50~100만원 (첫만남이용권) 200 → 300만원<다자녀>
- 직장어린이집 운영비·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,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(15→20만원)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(8.5→11만) 및 정부 보조비율*을 확대하고,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추가 확보(전국 1,030→2,315개반)
 - * 2자녀 이상시 본인부담금 10% 추가경감
- **(육아휴직)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 연장(12→18개월), 맞돌봄 특례기간·급여상한 확대***
 - * (現) 3개월 최대 300만원 → (改) 6개월 최대 450만원
-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“일부 차감(공무원 15%, 민간 25%) 및 복직 후 환급”에서 “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”으로 전환 검토
 - * (고용부) 사후환급금 폐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4.上)
 - (인사처) 공무원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('24.1~)
- **(기업문화)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하고,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·인프라 지원*** 확대
 - * (現) 재택·원격근무 → (추가) 선택근무, 시차출퇴근
- ‘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’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,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지 육아친화경영 배점* 확대
 - * (現)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가점(5점) 부여 중

③ 실버타운·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

- **(실버타운) 기재부·국토부·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·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('24.上)**

- ▶ 헬스케어 리츠(주택기금 출자)로 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
- ▶ 택지 공급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실버타운용 부지 배정
- ▶ 학교 유휴 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실버타운 공급 지원
- ▶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하는 방안 검토

- **(퇴직연금) 기재부·고용부·금융위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단계별(가입·운용·수령) 제도 개선방안 마련**

- ▶ (가입) 쏘사업장 도입 단계적 의무화, 중소기업 도입 지원 확대(156→223억원) 등
- ▶ (운용) 취약계층 납입지원 강화, 중도해지 요건 강화, 수익률 제고방안 모색 등
- ▶ (수령)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제도개선 검토, Opt-out 방식 자동연금 도입

4 무탄소 에너지 확산,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 통해 탄소중립 이행

【에너지 탈탄소화 추진】

- **(CFE 이니셔티브) ‘가칭 CFE 프로그램’을 개발하여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,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**

* 기관·기업요건, 인증기준, 공표절차 등 세부내용 마련

- **(에너지계획) 원전·수소·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‘24~’38년)」 수립(‘24.上)**

- **(수요확대) REC 가중치 정기개편(‘24.下) 및 중대형 태양광·풍력 확대,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애로 해소**

- **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 촉진(‘24.上), 직접 전력구매계약(PPA)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**

- **(에너지믹스) ‘24년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·해상풍력·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**

- ▶ (해상풍력) 「해상풍력 특별법」 입법 추진(계획입지 개발, 인허가 의제 등 규정)
- ▶ (태양광)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연결제도 종료,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속 인허가 등
- ▶ (원전) ‘24년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 발주(신한울 3·4호기 건설, 원전 수출 등)
- ▶ (청정수소)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(‘24.上),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(‘24.上) 등

【수송·건물·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】

- **(수송) 「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(‘24.1월)하고,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여 성능개선·기술혁신 유도**

- **충전기 보급(‘24년 6만기), 전극·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(11개 품목)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**

- (건물)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('24년)하고,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
 - 건축물 에너지인증제*를 '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인증'으로 통합하고,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(용도·규모)** 확정('24.上)
 - * (現) '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'와 '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'을 개별적으로 운영
 - ** (現) 공공건축물 5백㎡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
- (산업)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, CCUS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추진
 - 수소·원자력·신재생에너지·자원순환 관련 친환경·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로 추가 지정

5 녹색금융·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

- (녹색금융)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·융자·보증지원* 규모를 확대하고,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** 지원 강화
 - * 투자·융자·보증(조원): ('23)27.1 → ('24)30.9 ** 이차보전(억원): ('23)400 → ('24)552.6
- (배출권제) 유상할당·BM할당 확대,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NDC를 감안한 「제4차 기본계획('26~'35년)」을 '24년 내 수립
 - 「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」을 수립('24년)하고,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추진
 - * 시장참여자 확대, 선물 등 파생거래 도입, 경매제도 개선(유상할당 확대 등) 등
 -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* 추진
 - * 기업이 혁신적 저탄소기술 도입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→ 연구용역·부처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구체화(적용분야·검증방식 등)
- (기후기금)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 개편
- (환경정보) ESG공시 국제표준 반영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편하고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기에 맞춰 공개시기 조정(12→8월)
- (탄소중립포인트) 소비자 적립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판매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'소상공인 지원포인트' 신설, 소상공인 참여 유도
 - * (예) 텀블러 사용시, 소비자 포인트(300원) 외에 소상공인 포인트(30원) 추가 제공

◇ 미래세대에 일자리·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간 이동성 제고

①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

-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·추진

▶ (패키지 지원) 「재학생 1:1 컨설팅 → 교육·일경험 → 구직의욕 고취·취업지원서비스 → 취업성공수당」 연계 지원방안 마련

* 맞춤형 고용서비스, 일경험·훈련비 지원, 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성공수당 등 연계

▶ (성장경로 마련)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 대·중소기업 참여 하에 취업→역량향상→자산형성 등 연계 지원방안 마련(지방(교육)재정 활용)

* 계약학과 신설, 대중소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 유도

-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·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 (4.9→7.5만명)하고,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추진

- 他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의 주거·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(月 20만원, 평균 3개월) 지급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* 완화,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(50만원) 신설 등 통해 청년 근로유인 제고

* (現) 6개월 이상 실업, 취업경력 1년 미만(대학원 졸업후 3개월 이내 제외) 청년 등

(改) 4개월 이상 실업, 취업경력 1년 미만(제외요건 없음) 청년 등

- 청년 선호국가(주요 선진국·해외순방국 등)로의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위해 K-Move 스쿨 확대*, 연수장려금(月 최대 20만원) 신설

* 지원규모 : ('23) 201억원<2,100명> → ('24) 324억원<3,100명, +1,000명>

-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·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'브릿지 학년*' 도입 및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지원**

* ('24년) 17개 거점학교 중심 도입 → ('25년~) 수요 있는 직업계고 확산 추진

** 기업수요 연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으로 연계 ('24년, 1,350명 지원)

②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

- 청년도약계좌(만기 5년)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, 혼인·출산*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·비과세 유지
 - * 현재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·폐업,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
-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*’ 도입으로 우대금리·저리대출 등 지원,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허용을 통해 상품간 연계
 - * 최고금리 4.5%, 청약당첨시 대출이자율 최저 2.2%(결혼·출산시 최저 1.5%)
-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(24.12월) 연장, 가입요건 확대 검토
 -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(잔여복무기간 6→1개월) 하여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
-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* 가입 대상 확대(12~17세 생계·의료급여자 → 17세 이하 쏠 기초생활수급자)
 - *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이 직접·후원 통해 저축시 국가가 매칭 지원(월 최대 10만원)

③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

- **(가족돌봄지원)**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年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, 밀착 지원 서비스* 제공
 - * (가칭)청년미래센터내 돌봄 코디네이터(개소당 6명, 총 24명) 배치, 정기면담 등 밀착 사례관리 지원
- **(자립준비지원)** 자립수당 인상(月 40→50만원), 전담인력 확충, 민간 협력 멘토링·직무교육·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 강화
- **(마음건강지원)** 청년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센터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
 - * 등록 전 초기상담, 선별검사, 사례관리,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
- **(고립은둔청년)** 심리상담, 공동 생활지원(소통훈련, 생활관리 등),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* 등을 통해 사회복귀 유도
 - * 유사 경험 공유한 가족끼리의 모임을 통해 사회 적응력, 자립능력 향상 등 문제해결 방법 공유, 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정기면담·모임 유지 등 사후관리 지속

1. 대외 여건

□ 국가별·부문별 회복세 차별화,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 전망

○ (성장)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전환 기대가 있으나, 그간의 금리 인상 누적효과로 세계경제 성장세의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

▪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세계 교역량이 회복되면서 내수(美·中)-수출(獨·대만) 중심 국가 간 회복세 차별화 예상

* 글로벌 제조업 PMI(p) : ('23.1/4) 49.5 (2/4) 49.3 (3/4) 48.9 (10) 48.8 (11) 49.3

글로벌 서비스업 PMI(p) : ('23.1/4) 52.3 (2/4) 54.8 (3/4) 51.4 (10) 50.4 (11) 50.6

* 글로벌 교역량 전망('23→'24, %) : (IMF) 0.9→3.5, (OECD) 1.1→2.7, (WTO) 0.8→3.3

○ 지정학적 위험(중동/러·우/中·대만), 글로벌 분절화 심화,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

* 주요국 정치 이벤트['24.1월 대만, 3월 러·우, 11월美 대선 등] 전후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IMF<'23.10월>)

	전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3년 ^e	3.0	1.5	2.1	0.7	0.5	2.0	5.0	6.3
'24년 ^e	2.9	1.4	1.5	1.2	0.6	1.0	4.2	6.3

○ (물가) 원자재가격 안정, 수요측 상방압력 약화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 점차 둔화 예상

* 국제유가 실적·전망(\$/b, 두바이유, 자체추정) : ('22) 96 → ('23) 82 → ('24^e) 81

▪ 다만, OPEC+ 추가 감산 여부,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, 글로벌 이상 기후 등 높은 불확실성 상존

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(% , IMF<'23.10월>)

	선진국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3년 ^e	4.6	4.1	5.6	7.7	3.2	0.7	5.5
'24년 ^e	3.0	2.8	3.3	3.7	2.9	1.7	4.6

○ (금융시장)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*되었으나, 긴축기조 장기화 여파로 신흥국 등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 상존

* 주가변동지수(VIX, %) : ('23.6) 13.6 (7) 13.6 (8) 13.6 (9) 17.5 (10) 18.1 (11) 12.9 (12) 12.5

2. 국내경제 전망

1 경제 성장

① [GDP] '23년 1.4%, '24년 2.2% 성장 전망

- ('23년) 상반기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웠으나,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

* 성장률(전년동기비<전기비>, %) : ('23.1/4)0.9<0.3> (2/4)0.9<0.6> (3/4)1.4<0.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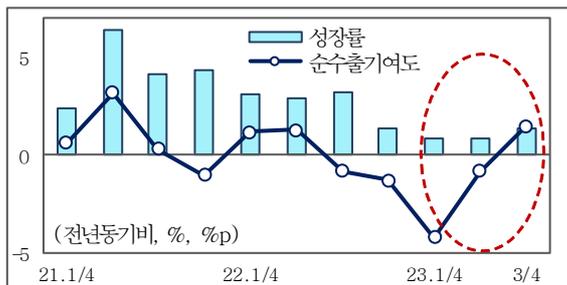
- ('24년) 수출 중심 회복세가 확대되며 연간 2.2% 성장 전망

- 세계 교역량 회복('23년 0.9 → '24년 3.5%), 반도체 업황 호전 본격화 등으로 수출·설비투자가 개선되며 성장세 견인 예상

* '23→'24년 증가율 전망(%) : (수출[통관]) $\triangle 7.4 \rightarrow 8.5$ (설비투자) $\triangle 0.2 \rightarrow 3.0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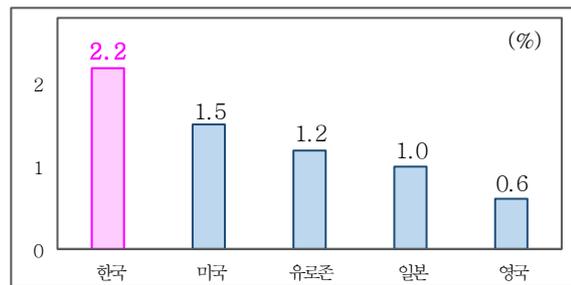
- 다만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둔화, 건설수주·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으로 건설투자 위축 전망

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



* 출처 : 한국은행

'24년 주요국 성장 전망



* 출처 : IMF

【경상GDP : '23년 3.1%, '24년 4.9% 성장 전망】

※ 경상성장률(%), <실질성장률 + 디플레이터 상승률>

: ('22) 3.9<실질 2.6 + 디플레이터 1.3> ('23^e) 3.1 <1.4 + 1.7> ('24^e) 4.9 <2.2 + 2.7>

- ('23년)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확대되며 경상성장률 연간 3.1% 전망

- ('24년) 실질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상승폭 모두 '23년 대비 확대되며 경상성장률 연간 4.9% 예상

- '24년 디플레이터는 반도체 가격 반등,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'23년 대비 상승폭 확대 예상

* 반도체가격 상승률 전망(%,'23→'24, <Gartner(12월)>) : (D램) $\triangle 43 \rightarrow 56$ (낸드) $\triangle 48 \rightarrow 49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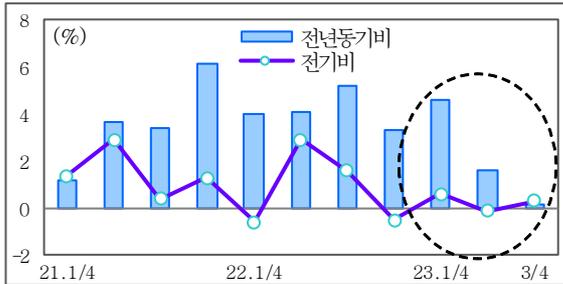
2 [민간소비] '23년 1.8%, '24년 1.8% 증가 전망

- ('23년) 대면 서비스업 중심 회복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, 소비심리 위축, 고물가·고금리 영향 등이 지속되며 회복세 약화

* 민간소비(전기비, %) : ('22.3/4) 1.6 (4/4) △0.5 ('23.1/4) 0.6 (2/4) △0.1 (3/4) 0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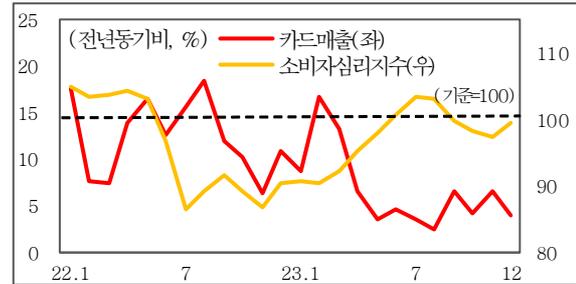
* 카드매출액(전년동기비, %) : ('23.1/4) 12.8 (2/4) 4.9 (3/4) 4.0 (10) 4.5 (11) 6.6 (12) 4.2

민간소비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소비심리지수·카드매출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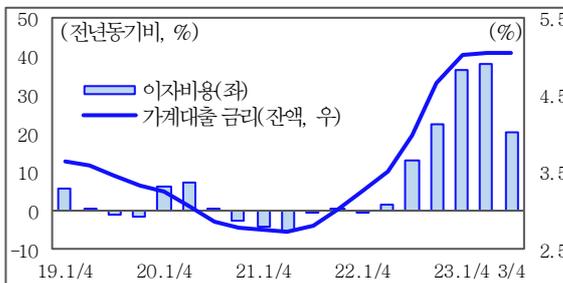
* 출처 : 한국은행, 여신금융협회

- ('24년) 양호한 고용, 초과저축 축적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,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부담 등으로 개선 제약 예상

- 물가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나,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, 고금리 영향이 이어지며 소비 회복세 제약
- 다만, 견조한 고용률, 점진적 물가 상승세 둔화,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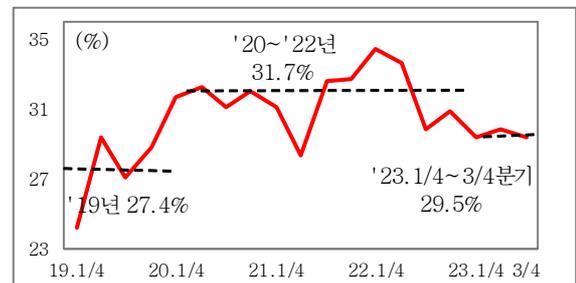
* 고용률(15세 이상, %) : ('19) 60.9 ('20) 60.1 ('21) 60.5 ('22) 62.1 ('23) 62.6 ('24) 62.8

가계대출 금리 및 가계 이자비용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가계흑자율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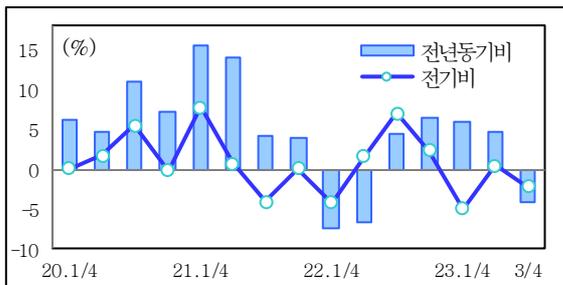
⇒ '23년은 대면서비스업 중심 회복세가 고물가·고금리 영향으로 점차 약화(1.8%), '24년은 누적된 물가·금리 부담 등으로 개선 제약(1.8%)

3 [설비투자] '23년 $\Delta 0.2\%$ 감소, '24년 3.0% 증가 전망

- ('23년)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, 반도체 등 수출 감소로 인한 투자 수요 제약 등으로 대체로 부진한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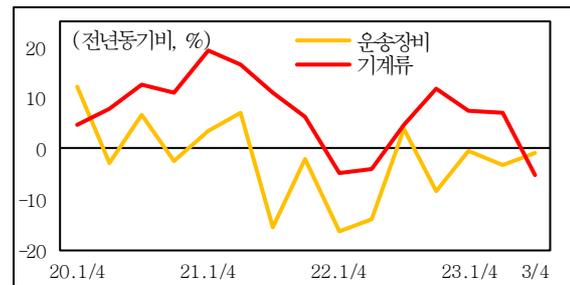
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2.3/4) 7.0 (4/4) 2.4 ('23.1/4) $\Delta 5.0$ (2/4) 0.5 (3/4) $\Delta 2.2$

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부문별 설비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- ('24년) IT업황 호전 본격화, 수출 회복 등으로 반등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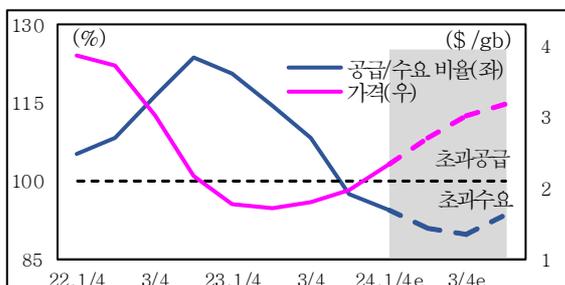
-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, 고성능 반도체·이차전지·전기차·AI 등 신산업 투자 확대에 개선 예상

* '23→'24년 반도체 매출전망(% WSTS<'23.11월>) : (전체) $\Delta 9.4 \rightarrow 13.1$ (메모리) $\Delta 31.0 \rightarrow 44.9$

- 항공기·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도 해외여행 정상화, 세계교역 회복 등 영향으로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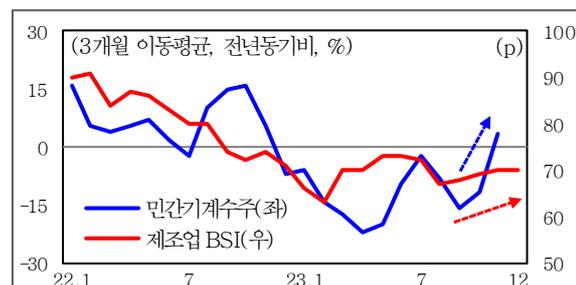
- 다만, 고금리 영향,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업황 관망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제약될 가능성

반도체(D램[8Gb 평균]) 수급·가격 전망



* 출처 : Gartner('23.12월)

민간기계수주 및 제조업 BSI



* 출처 : 통계청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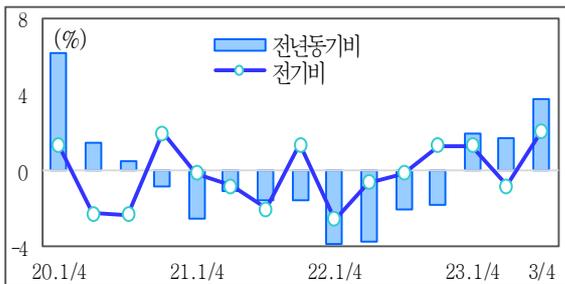
⇒ '23년은 고금리, 반도체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($\Delta 0.2\%$), '24년은 IT업황 반등, 신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(3.0%) 전망

4 [건설투자] '23년 2.7% 증가, '24년 △1.2% 감소 전망

- ('23년) 전자재 가격상승·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연된 공사가 시차를 두고 정상화되며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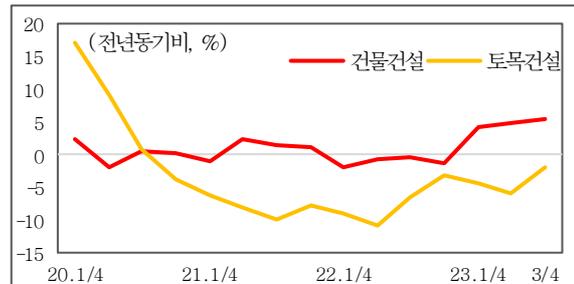
* 건설투자(전기비, %) : ('22.3/4) △0.1 (4/4) 1.3 ('23.1/4) 1.3 (2/4) △0.8 (3/4) 2.1

건설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형태별 건설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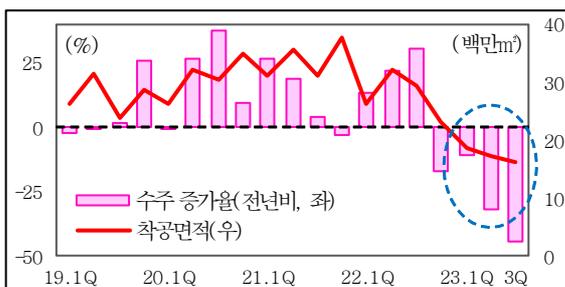
- ('24년) 수주·착공 감소, 고금리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,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건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 예상

* 소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(기말, %) : ('21) 0.37 ('22) 1.19 ('23.3) 2.01 (6) 2.17 (9) 2.42

- (건물) 비주거용 건물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소폭 개선 되겠지만, 주거용 건물은 부동산경기 하강 등으로 위축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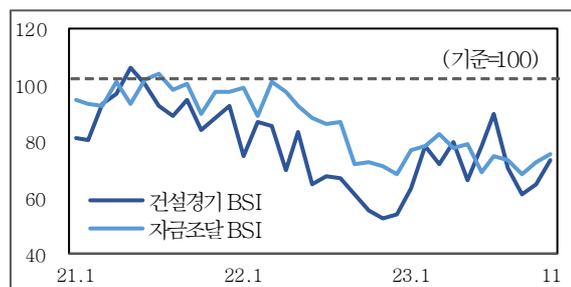
* 서울APT 매매가(전주비, %) : (10.1주)0.10 (11.1주)0.05 (12.1주)△0.01 (12.4주)△0.03

건축수주·착공면적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, 국토교통부

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



* 출처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

- (토목) 정부 SOC 예산 증가 및 수도권 GTX 등 주요 SOC 사업 본격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 예상

* SOC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3) 25.0 → ('24) 26.4 <전년대비 +1.4조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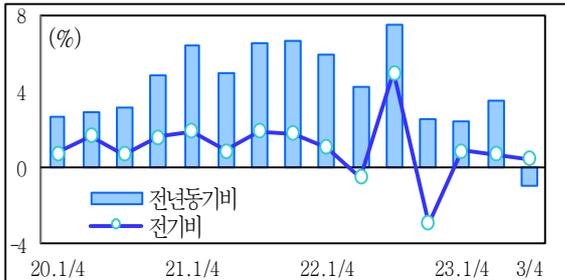
⇒ '23년은 기착공 물량 공사가 진행되며 비교적 양호(2.7%), '24년은 건설수주·착공 감소가 점차 반영되며 부진(△1.2%) 전망

5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'23년 2.1%, '24년 2.7% 증가 전망

- ('23년) 금리 인상, 기업실적 악화 영향 등으로 연구개발 중심으로 평년(10년 평균 증가율 : 4%대) 대비 주춤한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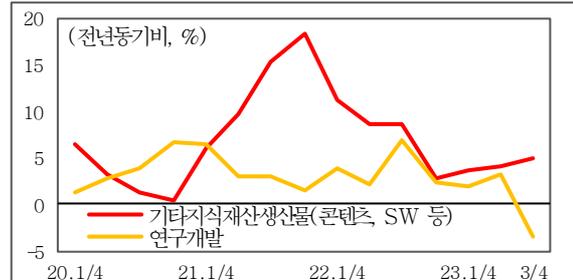
* 지재투자(전기비, %) : ('22.3/4) 5.0 (4/4) △2.9 ('23.1/4) 0.9 (2/4) 0.7 (3/4) 0.5
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



* 출처 : 한국은행

- ('24년) 정부 부문 비중이 다소 줄어드나,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 R&D 투자가 확대되며 개선 예상

* R&D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3) 31.1 → ('24) 26.5 <전년대비 △4.6조원>

⇒ '23년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다소 주춤(2.1%), '24년은 경기 회복, 신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소폭 개선(2.7%) 전망

6 [수출입(통관) 수출 '23년 △7.4% 감소, '24년 8.5% 증가 수입 '23년 △12.1% 감소, '24년 4.0% 증가 전망

【수출 : '23년 △7.4% / '24년 8.5%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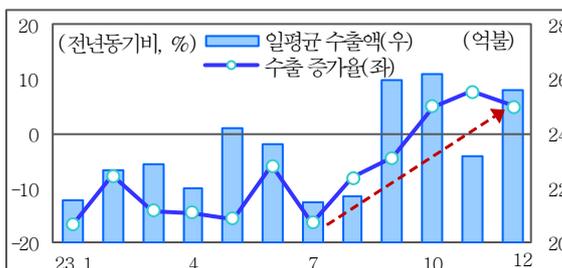
- ('23년) 상반기 부진하던 수출은 자동차 호조세·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 플러스 흐름 지속

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3.1/4)△12.8 (2/4)△12.0 (3/4)△9.7 (10) 5.0 (11) 7.7 (12) 5.1

- 최근 특정 품목·지역 편중 없이 고른 수출 개선세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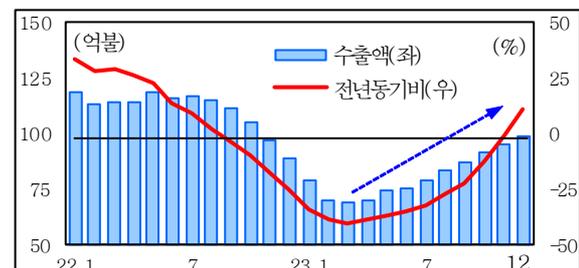
* 일평균 기준 15대 품목 중 12개 품목, 9대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 증가('23.12월)

수출 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추이



* 출처 : 관세청

반도체 수출 추이(3개월 이동평균)



* 출처 : 관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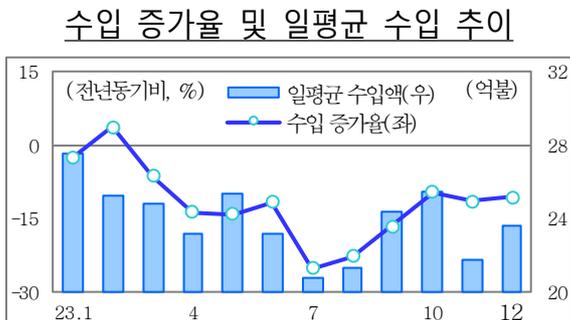
- ('24년) 글로벌 교역 확대,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반등 전망
 - IT제품·선박 업황 호조 등이 수출 증가 견인, 주요국의 설비·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로 기계 등도 양호한 흐름 예상
 - 다만, 중국경제 회복 지연, 지정학적 불안, 공급망 차질,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수출 개선 제약 소지
- * 중국의 흑연 및 요소수 수출통제('23.12월 시행)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 차질 빈도 증가

【 수입 : '23년 △12.1% / '24년 4.0%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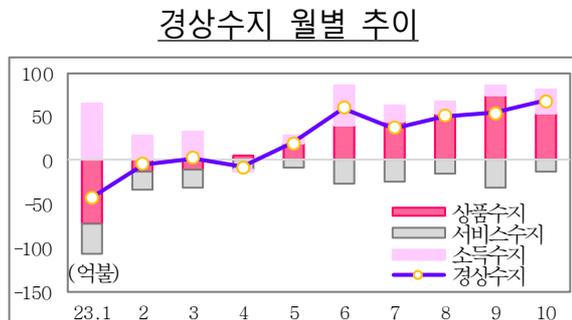
- ('23년) 원유·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 감소
 - * 수입(전년동기비, %) : ('23.1/4)△2.2 (2/4)△13.2 (3/4)△21.6 (10)△9.7 (11)△11.6 (12)△10.8
- ('24년) 에너지 가격이 대체로 안정화되는 가운데, 수출·설비 투자가 개선되며 중간재·자본재 수입 중심으로 증가 전망
 - * 국제유가 실적·전망(\$/b, 두바이유, 자체추정) : ('22) 96 → ('23) 82 → ('24^e) 81

【 경상수지 : '23년 310억불 / '24년 500억불 】

- ('23년) 상품수지 회복에 힘입어 2/4분기 이후 흑자기조 지속
 - * 경상수지(억불) : ('22) 298 ('23.1/4)△46 (2/4) 70 (3/4) 141 (10) 68
 - 상품수지(억불) : ('22) 151 ('23.1/4)△99 (2/4) 64 (3/4) 171 (10) 54
- ('24년)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며 흑자 규모 확대 예상
 -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 확대되는 가운데,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예상
 - * '23→'24년 수지 전망(억불) : (상품수지) 310 → 550 (서비스·소득수지) 0 → △50



* 출처 : 관세청



* 출처 : 한국은행

□ 취업자수는 '23년 32만명, '24년 23만명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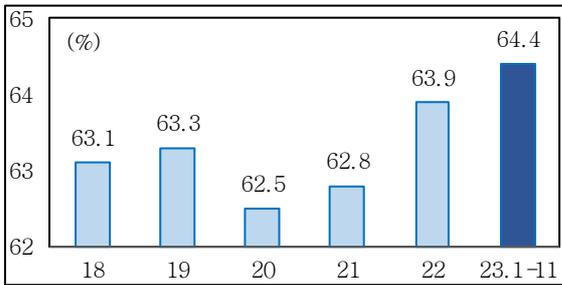
- ('23년) 취업자수는 경제활동 참여 증가, 돌봄수요 확대 등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지속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

* 취업자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3.1/4) 39.7 (2/4) 34.6 (3/4) 26.3 (10) 34.6 (11) 27.7 [1~11월] 33.1

- 이에 따라 고용률(62.6%)은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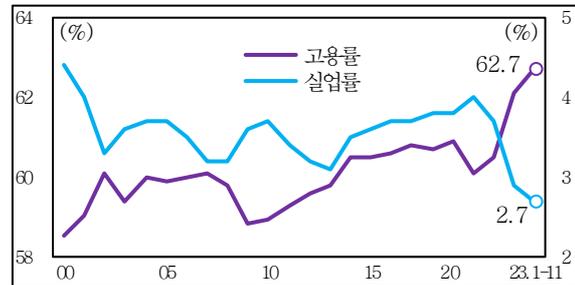
* 고용률(15세 이상, %) : ('19) 60.9 ('20) 60.1 ('21) 60.5 ('22) 62.1 ('23.1~11) 62.7

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고용률·실업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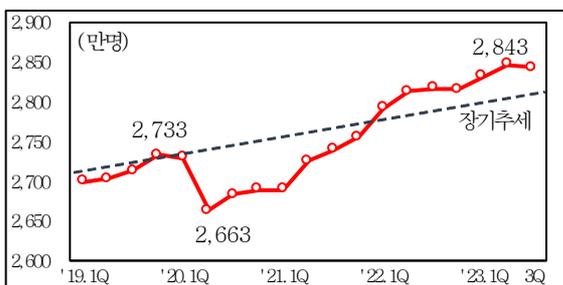
* 출처 : 통계청

- ('24년) '22~'23년간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'23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둔화 전망

* 2년간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했던 고용 흐름이 추세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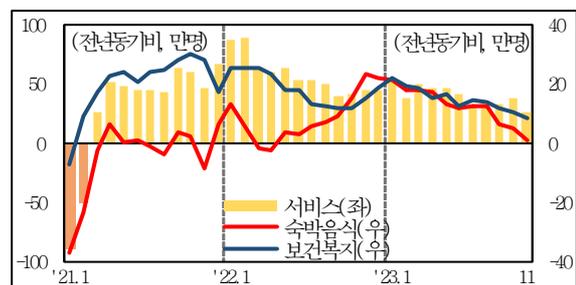
-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
- 다만, 돌봄수요 증가, 여성·고령층 중심 노동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·공공행정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유지 예상
- 고용률은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,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 전망('23년 62.6 → '24년 62.8%)

취업자수 추이(계절조정)



* 출처 : 통계청

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□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23년 3.6% 기록, '24년 2.6%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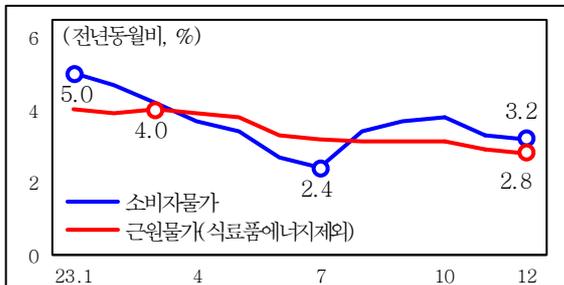
○ ('23년)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, 기상 악화 등으로 상승했으나,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며 11월부터 3% 초반대 회복

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3.1/4) 4.6 (2/4) 3.3 (3/4) 3.1 (10) 3.8 (11) 3.3 (12) 3.2

▪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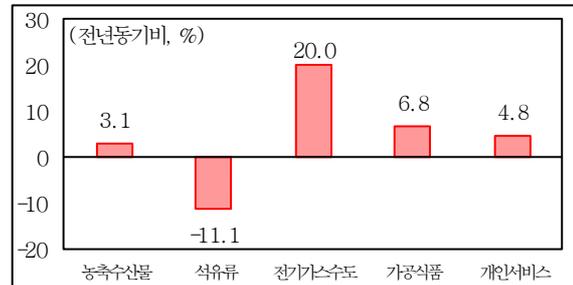
* 근원물가(식료품·에너지 제외, 전년동기비, %) : ('23.1/4)4.0 (2/4)3.7 (3/4)3.2 (10)3.1 (11)2.9 (12)2.8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'23년 품목별 상승률



* 출처 : 통계청

○ ('24년)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23년 대비 상당폭 낮은 2.6%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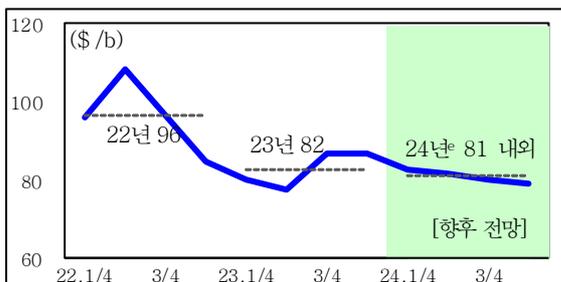
▪ 국제유가가 대체로 안정화되는 가운데,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수요측 상방압력도 완화 예상

* 기대인플레이션율(%) : ('23.1/4) 3.9 (2/4) 3.6 (3/4) 3.3 (10) 3.4 (11) 3.4 (12) 3.2

▪ 다만, 기상여건, 지정학적 리스크*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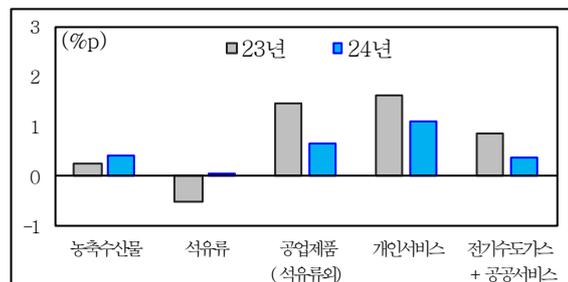
* 러·우 전쟁 향방, OPEC+ 감산유지 여부, 중동 불안, 공급망 차질 심화 가능성 등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* 출처 : 페트로넷,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* 출처 : 자체 추정

2023~2024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'22년 실적	'23년				'24년 전망
		1/4	2/4	3/4	연간 ^e	
전망 전제						
세계경제*	3.5	-	-	-	3.0	2.9
Dubai 유가(\$/bbl)	96	80	78	87	82	81
실질 GDP	2.6	0.9	0.9	1.4	1.4	2.2
민간소비	4.1	4.6	1.6	0.2	1.8	1.8
설비투자	△0.9	5.9	4.7	△4.2	△0.2	3.0
건설투자	△2.8	1.9	1.7	3.8	2.7	△1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5.0	2.4	3.5	△0.9	2.1	2.7
경상 GDP	3.9	2.3	1.3	4.3	3.1	4.9
취업자 증감(만명)	81.6	39.7	34.6	26.3	32	23
고용률(15세 이상, %)	62.1	61.2	63.2	63.2	62.6	62.8
소비자물가	5.1	4.6	3.3	3.1	3.6	2.6
경상수지(억달러)	298	△46	70	141	310	500
상품수지(억달러)	151	△99	64	171	310	550
수출(통관)	6.1	△12.8	△12.0	△9.7	△7.4	8.5
수입(통관)	18.9	△2.2	△13.2	△21.6	△12.1	4.0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48	53	6	△29	0	△50

*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3.10월)

1. '24년 1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과일류 21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	기재부 등
· 공공기관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	기재부
· 다소비 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	복지부
·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(~'26)	과기정통부
·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및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	교육부
·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	금융위
·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한 연장	금융위
·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	행안부
·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매입시 1년 한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	국토부
·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공사 등에 1년 한시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 양도 허용	국토부
· 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(지방주택공사 운영) 재산세 경감	행안부
·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	기재부
·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 감면	기재부·행안부
·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(버팀목대출) 지원	국토부
·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(업체당 20만원)	중기부
·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(2.3조원+α) 등	금융위
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	기재부
·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(40→80%, '24.上)	기재부
·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확대	기재부
·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	중기부
·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(20%) 도입	기재부
·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(△70%)	기재부
· 5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연장	환경부
· 여행가는 달 2월 개최	문체부
·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빈집숙박 실증특례 확대	농식품부
·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국가 확대(1→6개국)	법무부
· 제로페이-해외결제사(7개) 간 연동 및 가맹점 확대	중기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(호텔업 7종)	기재부
·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 운송계약 체결 지원	해수부
·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	국세청
· 방산기술 신성장·원천기술 지정	기재부
· 「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」 신설·운영	기재부
·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	기재부
· 일반분야 R&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 상향('24)	기재부
· 투자익스프레스 신설	기재부
·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	기재부
· 유턴·외투기업 운영자금 우대지원(수은)	기재부
·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·운영	교육부
·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지자체·쿼터 확대	법무부
·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가동·운영	기재부
· '24년 한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(100%)·학교용지부담금(50%) 감면	교육부·국토부
·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	국토부
· PF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 취득세 감면(~'25)	행안부
·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배제 1년 한시 연장	기재부
·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(수은) 확대	기재부
· 원자재 수입보험 대상 확대조치 연장	산업부
·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 감면비율 상향	산업부
· 원유 유종별 비축비중 조정 및 국제 공동비축사업 추진	산업부
·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업체 인센티브 제공	조달청
·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	금융위
·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	국토부
· 규제샌드박스 종합 개선방안 마련	국조실
·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/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	산업부
·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 개장	해수부
·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	법무부
·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특별채용제도 도입 및 통합적 정원 활용추진	과기정통부
·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도전적·혁신적 R&D 추가	과기정통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, 재정·규제 특례기한 연장	중기부
·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 마련	조달청
·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 추진	중기부
·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방안 마련	과기정통부
· K-미식벨트 조성 및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추진	농식품부
· 제5차 MICE 육성 기본계획 발표	문체부
· 디지털헬스케어·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	기재부
· ^{가칭}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	공정위
·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	기재부
· 저소득층 중심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, 근로장학생 선발 확대	교육부
·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·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	기재부
·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	복지부
·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	법무부
· 숙련기능인력(E-7-4) 활성화방안 마련	법무부
·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 확대	복지부
·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	기재부
·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	여가부
·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확보	복지부
·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	기재부
· 「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」 마련	기재부
· 탄소포인트제 관련 '소상공인 지원포인트' 신설	환경부
· ESG 공시기준 마련	금융위
· K-Move 스쿨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	고용부
· 일경험 체류비 지급 신설	고용부
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완화,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인센티브 신설	고용부
· 혼인·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, 비과세 유지	기재부
·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(잔여복무기간 6→1개월)	기재부

4. '24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지자체 공공요금 가격안정 인센티브 강화(서민밀접품목 평가 비중 확대)	행안부
· 주요 생필품 용량·규격·성분 등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 제도화	공정위
·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·한도 확대	국토부
·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	금융위
· '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' 방안 마련	고용부
·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	산업부
·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시, 1주택자 간주(재산세)	행안부
· 농촌소멸 대응방안 및 수산업·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	농식품부·해수부
·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	국토부
·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·설치 및 3개년 기본계획 수립	기재부
· 10대 분야 킬러규제 개선	국조실
·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	산업부
·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	과기정통부
·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	과기정통부 등
·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	과기정통부
· CVC 관련 M&A 규제 완화	중기부
· 이중구조 개선대책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	고용부
·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	기재부·고용부
·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개편안 마련	고용부
· 우수인재 영주·귀화제도 개선방안 마련	법무부
· 비전문인력(E-9)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마련	고용부
· 전국 지자체 대상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지자체별 컨설팅 실시	법무부
·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	기재부 등
· 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'24~'38)」 수립	산업부
·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신설	고용부

3. '24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체육교습업 가격표시 시행	공정위
·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 인하	교육부
·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	복지부
·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	기재부
·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	중기부
·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	중기부
· 의료통역 검정시험 합격자 사후관리체계 마련	복지부
· 우주항공청-NASA 공동연구 사업 발굴	과기정통부
· 수출기업 쇼케이스, 한-중남미 무역포럼 추진	기재부
· 기회특구 입주 외투기업 현금지원 국비분담률 상향	산업부
· 국가·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보조금 지원한도 상향	산업부
·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	산업부
· 도심융합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기본·실시계획 승인	국토부
· 문화특구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	문체부
·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지정	중기부
·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	기재부 등
·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시, 1주택자 간주(양도세·중부세)	기재부
·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 관광기금 용자 우대금리 등 적용	문체부
·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	기재부·행안부
· 산업·환경분야 부담금 경감방안 마련 및 부담금 관리제도 개편	기재부
· 경제안보핵심품목 지정	기재부
· 상호금융권 부동산·건설업 여신한도 신설	금융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농지 관리제도 합리화	농식품부
· 소멸 고위험 지역에 ^{가칭}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	농식품부
·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	산업부
·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적기 공급방안 마련	산업부
·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추진	중기부
·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, 세제지원 기간 연장(졸업 2년 연장)	기재부
· 중소기업 정부지원 개선대책 마련	기재부·중기부
·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SPC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추진	기재부
· 서비스 성장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	기재부
· 주류 제조·유통과정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	기재부
·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	기재부
· '일-가정 양립 지원 방안' 마련	기재부·고용부
·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, 추가공제 대상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추가	기재부
· 사내대학 설립·운영규제 완화	교육부
·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	고용부
·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실시	복지부
· REC 가중치 정기개편	산업부
· 직접전력구매계약(PPA)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	산업부
· 「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('26~'35)」 수립	기재부·환경부
· 「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」 수립	기재부·환경부
·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	기재부
·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, 가입요건 확대 검토	기재부